

복지요결 시설판 : 시설 사회사업 요결과 야성

2019년 3월 12일

복지요결 복지야성 복지소학 복지영성 복지경영, 실천 사례집과 기타 참고 문헌의 원고를 <http://welfare.or.kr>에 한글과 PDF 파일로 공유합니다.

본문	부록
머리말 3	시설 사회사업 83
사람과 사회 7	사회사업 기록 101
사회사업 개념 16	사회사업 평가 103
사회사업 가치 27	시설 야성 109
사회사업 이상 32	인권 131
사회사업 철학 40	탈시설론 140
사회사업 주안점 45	사고 154
사회사업 방법 58	
사회사업가 74	
맺음말 82	

우리는 오늘도 복지인의 길을 간다

머리말

사회사업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사회사업 잘하고 싶습니다.

근본 있는 사회사업가고 싶습니다.

사회사업이 어떤 일이며 무슨 가치가 있는지 의미도 모르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며 복지의 바탕이 무엇인지 원리도 모르고 그저 뛰어 들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상과 철학도 없이 달음질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사회사업 바르게 했다 잘했다 할 것인지 기준도 없이 그저 열심히 할 수는 없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얼마 동안은 그럴 수 있겠으나 오래하지는 못할 일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마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회사업 그렇게 하는 까닭, 근본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요결은 사회사업을 근본으로부터 탐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돕는 일 가운데 일부에 해당합니다.

정책이나 행정, 이상행동 중독 학대 폭력에 대응하는 일, 긴급구호나 위기개입, 보육이나 케어, 전문 상담이나 치료, 자활이나 자립 지원 사업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1. 연구 방법

1) 순서

사회사업 ‘방법’은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 따라 정해지고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리므로 먼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그로써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을 밝혀 사회사업 ‘방법’을 찾습니다. 참조 : 복지소학 ‘본말선후’

2) 열쇠 말

농사의 씨앗과 땅처럼 사람과 사회를 사회사업 핵심 원소로 봅니다. 복지요결은 이를 당사자와 지역사회라 하고 사회사업 온갖 주제를 대개 이 두 가지 열쇠 말로 풀이합니다.

3) 연역법

사람다움 사회다움으로부터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을 끌어냅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 관점에서 사회사업 개념을 정의하고, 사람다움 사회다움에서 사회사업 가치를 찾고,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지향하는 사회사업 이상과 철학을 세우고,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살리는 사회사업 주안점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4) 시선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가리키는 말이 되게 합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와 ‘복지사업’ - 어느 쪽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가? 어느 쪽을 가리키는 말이 되게 하는가? 사회사업 이론과 실재가 이로써 좌우됩니다. 사회사업 온갖 현상을 이로써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만능 해법, 만능 독법이라 할 만합니다.

5) 정합성

앞뒤가 들어맞게, 모순이 없을 뿐 아니라 따로 놀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이 서로 가지런히 꼭 들어맞게 이야기합니다.

6) 실용성

- ①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실무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 ② 사회사업에 비추어 그림직한 이야기,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일이나 처지와 역량이 제각각이니 어지간한 수준으로 이야기합니다.

7) 다중 원천

목상으로 영감을 얻습니다. 고전에서 근본을 찾습니다. 사회사업 문헌을 참고합니다. 이성으로써 궁리하고 따져 봅니다. 경험에서 배우고 경험에 비추어 따져 봅니다.

8) 주관성

주관을 인정하고 충실히 담아내되 얼마쯤 객관화하려 합니다.

- ① 다른 사람 보기에다 그림직하겠는지 헤아립니다. 동료들과 지식인들을 의식하여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 ② 논리가 정연한지 살피고 또 살핍니다. 스스로 묻고 답하고 비판하고 반론하며 절차탁마합니다.
- ③ 지금 여기서 나는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고, 달라질 수 있다고, 다른 때 다른 데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한계를 의식하고 여지를 둡니다.

2. 줄거리

1) 사람다움 사회다움

①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②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사회사업 개념 :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3) 사회사업 가치와 윤리

① 사회사업 핵심 가치는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② 사회사업 윤리는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돕는 겁니다. 적어도 해치지 않는 겁니다.

4) 사회사업 이상 : 사회사업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5) 사회사업 철학 : 사회사업은 복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흐르게 하고, 바탕이 살게 하고, 보편적이게 합니다.

6) 사회사업 주안점 :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강점, 관계에 특히 중점을 두어 살핍니다.

7) 사회사업 방법 :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잘됩니다.

8) 사회사업가 정체성 : 사회사업가는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사람, 연계 하고 주게 하는 사람, 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회

사람을 사람답게 돕고 싶습니다.

사회를 사람 사는 사회 같게 하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사람답다 하며 사람 사는 사회 같다 할 수 있을까요?

사회사업은

이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생각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1. 사람다움

1)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¹⁾

2)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기에 인간입니다. 혼자서는 인간이라 할 수 없고 존재 가치나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당사자와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²⁾

1) 당사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사회사업가가 이루어 주다 보면, 당사자는 그저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하기 쉽습니다. 주체 의식이나 역량이 약해지기도 하고 심하면 우민화합니다.

참조 : 복지야성 ‘소외 모순’, ‘자주 모순’, ‘우민화하는 복지기계’

2) 둘레 사람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사회사업가가 해 주다 보면, 둘레 사람이 멀어지기 쉽습니다. 심하면 무심해집니다. 당사자는 둘레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기 쉽습니다. 심하면 잊혀 갑니다.

참조 : 복지야성 ‘공생 모순’

2. 사회다움

1)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 세계나 다름없습니다.

① 약자도 살 만한 사회는,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약자도 일반 복지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¹⁾

②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약자를 만나고 돕는 사회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약자의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들이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함께하게 주선합니다.²⁾

1) 약자 전용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이를 핑계로 약자를 외면 기피 배제 분리 차별하기 쉽습니다.

참조 : 복지야성 '사람을 떼어 놓는 복지기계'

2) '와서 봉사해 주세요.'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약자를 도울 일은커녕 만날 일조차 없게 되기도 합니다.

봉사는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나 일상생활 밖에서의 행위에 쓰는 말입니다. 약자를 따로 떼어 놓고 돕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봉사 성행하는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의 본연일 리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비인간적 사회입니다.

약자를 복지기관에 맡기고 봉사나 하게 하는 일이 민망하고 두렵습니다.

참조 : 복지야성 '넘비형 자원봉사'

2) 사람 사는 사회는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 사는 것 같다 함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지역사회에 두루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이웃과 인정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¹⁾

1) 관계의 질이나 소통의 양은 다를지라도 아직은 도시에도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도시는 사람과 자원이 많고 이웃 인정에 대한 그리움이나 목마름이 있어 이웃 인정으로써 사회사업하기 좋습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들수록 더욱 이웃 인정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 인정이 삽니다.

이웃 인정 약해졌다고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이웃 인정 아주 없어지고 결국 인공복지로 연명하게 될 겁니다.

이웃과 인정이야말로 사람 사는 사회의 생명력, 인간성의 본질 아닐까요? 이를 놓아 버리고 인공복지로 연명하는 사회를 사람 사는 사회, 인간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공상 영화에서처럼 인공복지가 이웃 인정 대신하는 사회, 의식주와 직업 교육 의료 따위의 온갖 복지가 있는데 이웃이 없고 인정이 없는 사회...

이렇게 될까요? 언제쯤일까요?

그래도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사람 사는 것 같았던 게 언제 적입니까? 지금 세태 영상을 그때 보았다면 '실제'라고 믿었을까요?

인공복지 뒤편으로 이웃 인정 멀어져 갑니다. 인간적 사람살이를 잃어 갑니다.

뒷이야기

1. 자립과 자주

1) 자립은 자력으로써 섬이고 자주는 주체로서 행함입니다.

자립은 자력이라는 수단, 자주는 주체라는 자격에 달렸습니다.¹⁾

2) 자립 여부로 사람답다거나 사람답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자주는 사람다움의 필수 요소입니다. 주는 대로 먹는 짐승이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자주하지 않으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3) ‘사회사업으로써’ 자립케 하기는 어려워도 ‘사회사업에서’ 자주하게 도울 수는 있습니다.

자립은 일부 사업에서 희망하는 ‘목표’일 뿐이고 자주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4) 사회사업에 자립을 돕는 일이 없지 않으나

사회사업가의 마음은 ‘서로 기대어 사는 인간’에 있습니다.

참조 : 25쪽 ‘사회사업 영역과 소재’

1) 독립은 ‘따로 섬’입니다. 독립은 생활 단위에 달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따로 생활하는 겁니다.

시설 사회사업은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생활하게 돕습니다.

시설 주택에 살든 여느 주택에 살든 여럿이 살든 혼자 살든 생활지도원 도움을 받은 활동보조인 도움을 받은 따로 생활함이 독립입니다.

자립하지 못하고 자주하지 못해도 독립은 가능합니다.

2. 공생

어울려 산다, 더불어 산다, 함께 산다.

뚜렷하지 않아 혼용 통용하곤 하지만 나름대로 구분해 봅니다.

1) 어울려 산다

접촉 상관 소통하며 사는 공생입니다. 주로 복지 당사자를 주어로 합니다.

2) 더불어 산다

제 마당 제 샅터에서 돕거나 나누며 사는 공생입니다. 주로 복지 당사자 또는 약자를 목적으로 합니다.

3) 함께 산다

어울려 산다거나 더불어 산다 하기 어려울 만큼 관심이 없고 소통이 없고 돕거나 나누지 않으며 그저 동거 공존할 뿐이라도 함께 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울려 산다, 더불어 산다 할 자리에 대신 써도 괜찮아 보입니다. 둘 다 아우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간결해서 좋아 보입니다.

4) 약자도 살 만한 사회,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약자도 살 만한 사회는 소극적 형식적 기계적 공생에 가깝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적극적 실질적 인간적 공생에 가깝습니다.

3. 약자

1)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는 그 사회 여느 사람이나 다른 계층 집단에 비해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2) 상황적 약자

상황적 약자는 어떤 상황에서 약한 사람입니다.

사회사업 대상은 엄밀히 말하자면 ‘상황적 약자’입니다. 약한 상황 그 때 그 일에 사회사업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회사업에서 약자라 함은 상황적 약자 곧 약한 상황 ‘그때 그 일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일에서의 약점 문제 장애로써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시 약자인 것처럼 온갖 일에 개입 보호 관리하려 들지 않습니다. 성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약자가 아닌 상황, 그런 일까지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이 없다면 더욱 삼갑니다.

장애인이라 함도 장애를 겪는 상황 그때 그 일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보통 ‘어떤 기능이 손상·결여된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지만 사회사업은 그런 사람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장애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애를 겪는 상황적 약자가 있을 뿐입니다.

장애는 어떤 기능이 여느 사람과 다르거나 손상·결여된 사람이 그 사람과 맞지 않는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예컨대 이동 장애는 건축물 도로 교통수단 안내표지 따위가 그 사람과 맞지 않는 이동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는 서로 맞지 않는 상황 ‘그때 그 일에서’ 겪는 ‘상황적 장애’가 있을 뿐입니다.

장애는 이쪽과 저쪽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상황적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기능에 고유한 속성이 아닙니다. 지적 기능 같은 한 쪽 조건에 붙여 지적 장애니 지적 장애인이니 할 게 아닙니다.¹⁾

어떤 기능이 여느 사람과 다르거나 손상·결여된 사람은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장애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기능을 가리켜 무슨 장애인이라 함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²⁾

참조 : 48쪽 ‘생태 관점 문제, 장애’ | 정보원 카페 복지요결 게시판 [513](#)번 글

1) ‘지적 장애인’은 그 사람의 지적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듯 사실을 왜곡 오도하는 용어입니다.

지적 기능은 여느 사람과 다를 뿐이고, 장애는 그 사람의 지적 기능과 맞지 않는 상황 ‘그때 그 일에서’ 겪는 상황적 장애가 있을 뿐입니다.

‘지적 장애’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니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니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회 여느 사람에 비해 지적으로 약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사람, ‘지적 약자’라 함이 그나마 실정에 가까워 보입니다.

2) 다만 아직은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아주 쓰지 않고 말하기가 웅색합니다.

3) 사회사업이 약자만 돕는가?

① 사회사업 주 대상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약자의 복지를 이루는 일, 약자도 살 만하게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게 하는 일, 이는 사회사업에 정명 같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② ‘상황적 약자’ 개념을 적용하면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누구나 사회사업 대상일 수 있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사회사업이 약자만 돕는가? 그 약자가 ‘사회적 약자’를 가리킨다면 사회사업은 약자만 돕는다 할 수 없습니다.

4) 약자와 사회사업가

① 약자와 가까워야 사회사업 촉촉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약자에게서 멀어지면 헛헛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사업가는 그렇습니다.

② 승진할수록 약자에게서 멀어집니다. 사회사업가로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승진을 피하고, 승진하더라도 직접 사회사업을 다 내려놓지 않거나 얼마쯤 봉사한 후 일선으로 돌아감이 좋습니다.

③ 사회사업가에게 ‘사회사업가 아무개’보다 더 가슴 뛰는 직함이 무엇일까요? 일선 사회사업가로 은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5) 약자라는 용어의 불편함

사회사업을 다른 일과 구별되게 하려고 그 주 대상을 총칭하여 약자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 그때 그 일에서 그럴 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꺼림칙합니다. 당사자를 생각하면 민망합니다.

강점을 지닌 존재로 보면서 약자라 하니 이것도 꺼림칙합니다. 강점을 지닌 존재로 봄도 타당하고 약자라 함도 이유가 있으나 굳셀합니다.

사회사업 개념

사회사업 개념은 ‘사회사업은 어떤 일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회사업에 본디 그렇다 할 개념은 없습니다. 특정 관점에서 나름대로 정의할 뿐입니다. 다만 제대로 정의하려면

첫째, 사회사업 아닌 다른 일과 구별되게 해야 합니다. 사회사업만 그렇다거나 특히 사회사업이 그렇다 할 속성을 밝히는 겁니다.

둘째, 사회사업을 어지간히 아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그렇다거나 그럴 만하다 할 속성을 밝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일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일도 복지에 기여합니다. 대상도 소재도 방법도 사회사업만 그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사회사업을 포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아우르기에는 그 실체가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하든 그 관점에서 그 사람 생각이 그렇다는 것일 뿐, 그것이 곧 사회사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만 사회사업이라거나 다른 건 사회사업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지만 개념을 정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념도 없이 실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회사업 사회사업답게 하려면 사회사업이 무엇이며 어찌해야 사회사업답다 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참조 : 복지소학 ‘정명’ | 복지야성 ‘개념이 없으면’

1. 근본 관점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¹⁾

‘사람다움 사회다움’ 관점에서 보는 사회사업이 이리합니다.

1) 당사자와 지역사회

당사자가 이루게 도와야 사회사업 근본에 들어맞습니다. 다만 다른 일도 흔히 당사자가 이루게 하니 ‘당사자’만으로는 사회사업이라 하기에 부족합니다. 지역사회도 함께하게 도와야 사회사업답습니다.

2) 복지와 공생

복지를 빼고서는 사회사업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일도 복지에 기여하니 ‘복지’만으로는 사회사업이라 하기에 부족합니다. 더불어 살게 도와야 사회사업답습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복지에서 비롯하고 지역사회와 공생으로 사회사업다워집니다.

1) 복지요결에서 사회사업은 주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을 가리킵니다.

다만 그저 ‘복지를 이루는 일, 복지기관에서 하는 일,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가리키는 대목도 있습니다.

2. 생태 관점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환경 사이를 좋게 하는 일입니다.

당사자와 돌레 사람 사이, 약자와 일반 복지 수단 사이,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 그 사람살이 생태를 좋게 하는 일입니다.

참조 : 48쪽 '생태 관점 문제와 해결책'

3. 사회 관점

사회사업은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고 사회적 복지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수식어 '사회' 관점에서 보는 사회사업이 이릅니다.

1) 방법 : 사회사업은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는 사업, 곧 사회 속에서 사람 사이 관계를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 사업입니다.

2) 목표 : 사회사업은 사회적 복지를 이루는 사업, 곧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사업입니다. 참조 : 24쪽 '사회적 복지'

근본 관점 사회사업, 생태 관점 사회사업, 사회 관점 사회사업, 어느 것이나 그 실상은 동일합니다.

뒷이야기

1. 사회사업 본질

1) 사회사업이 줄어듭니다.

자치단체 종교단체가 가져가고 시장과 사회정책이 흡수하고 자원봉사자나 다른 전문직이 대체하고 다른 이름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사회사업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끝까지 남을 사회사업 그루터기, 사회사업 뿌리가 무엇일까요?

2) 사회사업이 늘어납니다.

사회사업이 다변화하거나 지면이 확대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쪽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폭넓게 융합한다, 다양한 영역으로 스며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사업을 더욱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과 융합해도 변할 수 없고 어떤 영역에 들어가도 놓을 수 없는 사회사업 본질이 무엇일까요?¹⁾

1) 사회사업은 사람들이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더불어 삶과 복지의 관계는 나무와 열매, 샘과 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데서 복지를 얻고 더불어 삶으로써 복지를 이루니 더불어 삶이 근본이고 복지는 말단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한마디로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라 할 만합니다.

더불어 살게 돕는 일, 끝까지 남을 사회사업 뿌리입니다.

더불어 살게 돕는 일, 변할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사회사업 본질입니다.

2. 당사자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받으면 좋을 사람입니다.

정확히 '복지 당사자'로 밝혀 부르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 아무개, 사람, 이용자 참가자 입주자, 아동 장애인 노인, 수급자, 어려운 사람, 약자, 지역 주민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대상자?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대상화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 꺼립니다.¹⁾

소비자나 고객?

정으로 하는 복지는 어떡하나 싶고 상업 논리로 빠지지 않을까 싶어 이것도 꺼립니다.

1) 대상자, 대상화

대상자는 중립적 용어입니다. 사업에는 대상자가 있으니 '대상자'라는 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화가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복지인데 당사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당사자가 하게 돕지 않는 겁니다.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사업가가 주가 되고 당사자는 객이 되어 버리는 방식, 당사자의 복지인데 사회사업가가 계획 통제하는 방식, 이렇게 사람을 대상화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참조 : 복지야성 '복지사업 문제'

대상자라 하면 대상화하기 쉽습니다. 대상화해도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따금 대상자라는 용어를 꺼립니다.

3. 지역사회

1) 당사자의 지역사회

① 사람

당사자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¹⁾ 참조 : 64쪽 각주 2) ‘그 밖의 사람’

② 공간

당사자가 살고 있거나 활동하는 곳, 당사자가 제 마당 제 삶터로 여기는 구역입니다. 참조 : 59쪽, 72쪽 ‘당사자의 곳’이라 합니다.

2) 기관의 지역사회

① 공간

기관이 속한 행정구역 또는 조례나 정관에 규정한 담당 구역입니다. 흔히 그냥 ‘지역’이라 합니다.²⁾

② 사람

지역에 살고 있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³⁾

1) 좁게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이고, 넓게는 이용하는|이용하면 좋을 복지 수단에 관련된 사람까지 아우릅니다. 둘레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복지 수단에 관련된 사람까지 아우를 때는 주로 ‘지역사회’라 합니다.

2) 지역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에, 지역 주민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역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 속에

3) 당사자와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기관의 지역사회’로써 돕는 일은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4. 복지

1) 복지와 사회복지

복지는 ‘복스러운 것 또는 복스러운 경지’입니다.¹⁾

사회복지는 ‘사회의 복스러운 것 또는 복스러운 경지’입니다.²⁾

2) 복지사업과 복지

① 복지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사업 곧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업과 구별하려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또는 복지기관에서 하는 일’ 이쯤이 그나마 실정에 가까운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³⁾

② 복지사업은 ‘하는 일’이고 복지는 복지사업으로써 ‘얻는 것 또는 되는 것’입니다. 흔히 복지사업도 그냥 ‘복지’라고 합니다.

1)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배고플 때는 밥 또는 배부름이 복지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밥은 복스러운 것이고 배부름은 복스러운 경지입니다.

2) 복지나 사회복지를 더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논함 같고 천하 경륜을 논함 같아 보입니다.

3) 복지요결에서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와 대비할 때 복지사업은 ‘복지기관의 일, 복지기관의 업적’쯤 됩니다.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합니다. ‘복지사업’은 행정 서류에 꾸며 넣는 이름에 불과합니다.

3) 소극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① 소극적 복지는 ‘나쁜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것 또는 나쁘지 않은 경지’입니다.

소극적 복지사업은 소극적 복지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나쁜 것을 다스리는 일 곧 나쁜 것을 해소 완화 보완 예방 억지하는 일입니다.

소극적 복지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격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낙인을 만들거나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사회사업가는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이거나 사회사업가는 대단해 보이고 당사자는 구차해 보이기 쉽습니다. 문제를 굳히거나 키우고 좋은 것을 해치기도 합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할 일입니다.

② 적극적 복지는 ‘더 좋은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 또는 더 좋은 경지’입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은 적극적 복지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좋은 것을 살리는 일 곧 좋은 것을 회복 개발 유지 활용 개선 강화하는 일입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격을 높이고 좋은 인상을 갖게 합니다. 문제와 직접 상관없어 보이는데 문제를 해소 완화 보완 예방 억지하거나 문제를 감당 극복 초월하게 하는 간접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적극적 복지를 이루고 누리는 경험이, 적극적 복지가, 문제를 희석 상쇄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합니다.

문제를 다룬다고 다 소극적 복지사업은 아닙니다. 소극적 복지사업은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일, 문제와 직접 상관있어 보이는 일입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으로써 문제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복지사업은 문제에 ‘간접’ 대응합니다. 참조 : 55쪽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

※ 소극적 복지 = 부정적 복지 | 적극적 복지 = 긍정적 복지

4) 사회적 복지와 비사회적 복지

① 사회적 복지

사회적 복지는 사회 속에서 이루고 누리는 복지입니다. 이는 곧 사회 속에 흐르는 복지입니다.

사회적 복지는 관계 복지입니다. 당사자와 돌래 사람 사이,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 그 관계 속에서 이루고 누리는 복지입니다.¹⁾

② 비사회적 복지

비사회적 복지는 복지기관에서 관계와 무관하게 이루어 주는 복지입니다.

비사회적 복지라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비사회적 복지가 더 급하고 절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삼가거나 신중할 일입니다. 임시로 최소한으로 함이 좋습니다. 비사회적 복지를 위주로 하다 보면 사회적 복지를 해치기 쉽습니다.

1)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를 위한 실천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광범위합니다. 세상 온갖 실천이 사회복지를 위한 실천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실천에게 하려면 사회복지 가운데 사회사업 핵심 소관을 한정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에서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사회적 복지’라고 봅니다. 이리므로 사회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 복지를 위한 실천’으로 정의합니다.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 곧 당사자와 돌래 사람 사이에,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지역사회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들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사는 관계, 정붙이고 살 만한 관계, 관계 복지를 살리는 일입니다.

5) 복지사업과 사회사업

① 목표와 방법

복지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목표가 복지를 이루는 데 있고 방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회사업도 복지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회사업답다 할 방법이 따로 있고 목표도 그러합니다.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게 돕고 지역사회가 함께하게 돕습니다.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사회사업만 이런 건 아니라도 이로써 사회사업을 여는 복지사업과 얼마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실체가 다 이런 건 아니라도 이로써 사회사업을 어지간히 아우를 수 있습니다.

② 영역과 소재

영역이나 소재로는 사회사업을 여는 복지사업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에 전속하는 영역이나 고유한 소재가 있을까요?

교육, 건강, 의식주, 환경, 결혼, 사고, 예술, 신앙, 인문, 인권, 자치, 직업, 육아, 여가, 취미, 일상생활...

사회사업 고유 영역이라거나 사회사업만의 소재라 할 게 없지만, 어느 영역에서든 어떤 소재로든 사회사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에 속하는 일이나 가족·이웃을 떼어 놓는 일은 삼가고, 처지와 역량을 헤아려 그림직한 영역이나 소재를 선택함이 좋겠습니다.

참조 : 복지야성 '사람을 떼어 놓는 복지기계', '학습 지도', '먹고사는 일'

6)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① 사회사업은 사회복지를 위해 ‘하는 일’이고, 사회복지지는 사회사업으로써 얻는 것 또는 ‘되는 것’입니다.¹⁾

사회복지를 위해 ‘하는 일’은 많습니다. 사회사업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치 행정 농업 장사 공연 방송... 다 사회복지지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지는 이런 일들으로써 얻는 것 또는 ‘되는 것’입니다.

② 사회사업은 ‘사업’이고, 사회복지지는 ‘복지’입니다.

사업과 복지는 크기나 넓이로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범주 자체가 다릅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복지는 복지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지도 크기나 넓이로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범주 자체가 다릅니다.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협의든 광의든, 사회사업은 사회사업이고 사회복지지는 사회복지입니다.²⁾

1) 비유하자면 사회사업은 밥을 먹게 하는 일이고 사회복지지는 밥입니다. 사회사업은 배부르게 하는 일이고 사회복지지는 배부름입니다.

의미상 품사가 다릅니다. 사회사업은 밥을 먹게 하거나 배부르게 한다는 동사이고, 사회복지지는 밥을 가리키는 명사 또는 배부른 경지를 가리키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사업한다’ 해야지 ‘사회복지한다’ 할 게 아닙니다. 다만 보통은 ‘사회복지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듣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업을 한다’ 또는 ‘사회사업한다’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2) 사회사업은 미시적 개념 또는 협의의 개념이고 사회복지지는 거시적 개념 또는 광의의 개념이다?

‘밥을 먹게 하거나 배부르게 하는 일은 미시적 개념 또는 협의의 개념이고 밥이나 배부름은 거시적 개념 또는 광의의 개념이다.’ 함과 같아 보입니다.

사회사업 가치와 윤리

1. 사회사업 가치

가치는 ‘유용하거나 바람직한 속성’입니다.

사회사업 가치는 복지를 이루는 데 유용하거나 바람직한 속성입니다. 그 핵심은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자주성은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는 속성입니다. 공생성은 어울리거나 더불어 사는 속성입니다.¹⁾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사회사업 핵심 가치라 함은

첫째,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하며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명실상부케 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삶 그 실질이 자주성이고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실질이 공생성입니다. 자주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삶이라 할 수 없고 공생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사람살이라 할 수 없습니다.

1)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은 지금 이 복지뿐 아니라 다른 때 다른 복지를 이루는 데도 유용한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살려 도움이 지금 이 사람의 이 일만 아니라 다른 때 다른 문제나 욕구, 다른 사람의 복지까지 두루 대응할 수 있는 근본책입니다.

2. 사회사업 윤리

1) 실천 윤리

돕는 행위에서의 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사회사업 가치입니다.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돕는 겁니다. 적어도 해치지 않는 겁니다.¹⁾

2) 직업윤리

직장이나 직업에서의 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기관의 윤리 규정이나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입니다.

3) 일반 윤리

직장이나 직업 밖에서의 개인 윤리 또는 사회 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개인 양심이나 신앙, 사회 통념이나 법 관습입니다.²⁾

1) 사람이 사람답고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 같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다운 곧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사람답게 도우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돕는가?” 이 물음은 곧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가?’ 함과 같습니다.

사람답게 돕고 있는지 성찰한다는 말입니다.

2) 직업윤리는 사회사업가이기 전에 직장인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이며, 일반 윤리는 직장인 직업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직업윤리와 일반 윤리는 정합성 실용성 있게 구체화하기 어려워 개념만 이야기합니다.

뒷이야기

1. 자주성의 한계

사회사업에서 자주케 한다거나 자주성을 살린다 함은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 당사자가 주인 노릇하거나 주인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회사업에 자주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없지 않으나 대개는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자주케 할 뿐입니다.

그때 그 일에서 자주케 하면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자주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자주하길 바라지만, 거기까지 사회사업 소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 : 13쪽 ‘상황적 약자’

공생성은 더 나아갑니다.

사회사업은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사회사업은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공생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도울 뿐 아니라 ‘그때 그 일로써’ 공생성을 살려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공생하게 하려 합니다.

2. 주체 의식, 자주성, 주체성

주체 의식은 내면의 속성이고 자주성은 외면의 속성입니다.

1) 주체 의식은 자기 복지라고 여기고 주관하려는 의식입니다.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려는 생각, 주인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2) 복지요결에서 자주성은 복지를 이루는 데 주체 의식을 행사하여 실제로 주인 노릇 하는 모습, 또는 사회사업 방식에 의해 사실상 주인 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더러 주체성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공생성과 짝지어 말할 때는 자주성이라 함이 좋습니다. 자주하다와 공생하다, 이렇게 동사에 ‘성’을 붙여 자주성과 공생성이라 하는 겁니다.

‘주체하다’는 다른 뜻의 동사입니다. 그 ‘주체하다’와 ‘공생하다’는 짝이 될 수 없으므로 주체성과 공생성을 짝지어 말하지 않습니다.¹⁾

주체성은 공동체성과 짝하고 자주성은 공생성과 짝합니다. 주체성은 객체성과 대비되고 자주성은 의존성과 대비됩니다.

1) 공동체 의식, 공생성, 공동체성

공동체 의식은 내면의 속성이고 공생성은 외면의 속성입니다.

① 공동체 의식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 더불어 살려는 마음입니다.

② 공생성은 실제로 더불어 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더러 공동체성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자주성과 짝지어 말할 때는 공생성이라 함이 좋습니다. ‘자주하다’와 ‘공생하다’, 이렇게 동사에 ‘성’을 붙여 자주성과 공생성이라 하는 겁니다.

‘공동체하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자주하다’와 ‘공동체하다’가 짝이 될 수 없듯 자주성과 공동체성도 그러합니다.

3. 자주성과 공생성의 요소

1) 자주성의 핵심 요소는 ‘주체 의식과 역량’입니다.

주체 의식이 있어야 자주하며 역량이 있어야 자주하는 일이 많고 수준 또한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회사업 실제에서 자주성은 당사자의 주체 의식이나 역량보다 사회사업 방식에 의해 더 좌우됩니다.

주체 의식이 강하고 역량이 있어도,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으면 자주성이 낮아집니다. 주체 의식이 약하고 역량이 부족해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자주성이 높아집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다 보면 당사자의 주체 의식과 역량이 회복 개발 유지 개선 강화됩니다.

2) 공생성의 핵심 요소는 ‘공동체 의식과 관계’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공생하며 관계가 있어야 공생하는 일이 많고 수준 또한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회사업 실제에서 공생성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나 관계보다 사회사업 방식에 의해 더 좌우됩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관계가 있어도,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으면 공생성이 낮아집니다. 공동체 의식이나 관계가 약해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공생성이 높아집니다.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과 관계가 회복 개발 유지 개선 강화됩니다.

사회사업 이상

이상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또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사회사업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최상의 지침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찌 알며, 나아가는지 역행하는지 어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은 엄중한 현실입니다. 참조 : 복지야성 ‘현실론’

이상도 없이 또는 이상을 거슬러 달음질하면 어찌되겠습니까?

시설이 좋고 자원이 많고 기술이 좋을수록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그만큼 더 빠르게 반복지로 치달을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1.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사회사업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약자도 살 만한 사회는,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샅터에서 약자를 만나고 돕는 사회입니다.

사회사업 이상은 약자 복지 별천지를 만드는 쪽보다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2.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

사회사업은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살 만한 사회입니다. 불편하거나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혼자서는 아닌 세상입니다.

사회사업 이상은 문제를 없애는 쪽보다 이웃과 인정을 살리는 쪽에 가깝습니다.¹⁾

1) 문제, 없애고 싶습니다.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이상을 말한다는 게 공허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던지 아니하고서는 이상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를 없애는 일이

① 꼭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생각이지만, 인생이란 게 괴로움과 즐거움 역경과 순경이 씨줄 날줄처럼 엮여 이루는 건데 한쪽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개인의 삶도 사회의 사람살이도 이런저런 문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의 총체인데 문제가 없으면 좋기만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참조 : 복지야성 ‘문제 인식’

② 자신도 없습니다. 세상 문제나 지역사회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의 한 가지 문제’도 감당키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③ 이상으로서는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당사자에게는 절실한 일이고 단위 사업에는 중요한 목표일 수 있지만, 사회사업 이상이라 하기에는 너무 낮아 보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가로서 꿈꾸는 세상은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래도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살 만한 곳, 고운 정이든 미운 정이든 정붙이고 살 만한 곳, ‘사람 냄새’ 나는 곳, 인간적인 세상입니다.

뒷이야기

1. 발전¹⁾

소박해짐이 발전입니다.

소박해야 뜻이 맑아지고 인정이 자랍니다.

평범한 일상에 녹아들이 발전입니다.

평범한 일상이라야 평안하고 오래갑니다.²⁾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이루고 누리는 복지를 지향합니다.³⁾

참조 : 복지소학 '발전'

1) 사회사업 이상은 이루고 또 이루어도 가고 또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발전을 생각합니다. 나아지거나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야 발전했다 발전하고 있다 할 수 있을까요?

2) 뜻은 사람다움의 알맹이이고 인정은 사회다움의 알맹이인데 대개 소박해야 뜻이 맑아지고 소박한 데서 인정이 자란다 합니다. 이러므로 소박해짐이 발전이라 합니다.

가고 또 가서 더할 나위 없는 경지에 이르면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꾸준히 이어갈 겁니다. 이러므로 평범한 일상에 녹아들이 발전이라 합니다.

진미는 물처럼 담박하고 훌륭한 문장은 평범할 뿐이라 합니다. 사회사업도 복지도 그럴 겁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이루고 누릴 겁니다.

3)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이루고 누리는 복지, 더불어 사는 사람살이에서 나오는 자연산 복지가 '복지의 본연'입니다.

2. 사회사업 하수와 고수

1) 사회사업 하수는 새롭거나 특별한 복지사업을 찾습니다. 나만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와~ 기발하다!’ 합니다.

사회사업 고수는 옛것이든 새것이든, 남과 다르든 같든, 다만 마땅함을 좇아 행하되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복지를 이루고 누리게 함이 발전입니다.

2) 사회사업 하수가 주선하는 관계는 봉사자 대 대상자, 후원자 대 대상자 관계입니다.

사회사업 고수가 주선하는 관계는 보통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도와주었다고 봉사자라 하지 않고 도움 받았다고 대상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웃이고 친척이고 동료이고 친구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보통의 사회적 관계 곧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로 만들어 감이 발전입니다. 일방적 관계에서 호혜적 관계로, 우열이 있는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 특별한 후원 봉사 관계에서 평범한 도움 나눔 관계로 다듬어 감이 발전입니다.

3) 사회사업 하수는 복지를 이루어 줍니다.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복지사업’으로 보입니다. 사회사업가는 빛나는데 당사자는 구차해 보이거나 사회사업가가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사회사업 고수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했다.’ 하고, 지역사회가 말하기를 ‘우리가 했다.’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고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이게 함이 발전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게 함이 발전입니다. 그리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돋보이고 빛나고 높아지고 자랑스러워지게 함이 발전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칭찬 감사가 많아지게 함이 발전입니다.

4) 사회사업 하수가 하면 사람들은, 그로써 드러나는 ‘복지사업’을 보고, ‘감탄’합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냈을까? 어떻게 이런 사업을 생각했을까? 어떻게 이런 자원을 개발했을까? 정말 대단하다.’ 합니다.

사회사업 고수가 하면 사람들이, 그로써 드러나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보고, ‘감동’합니다. ‘그래, 이래야 사람이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며 둘레 사람과 어울리고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살아 있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 그 이야기에 흐뭇해지고 몽클해지고 따뜻해지고 촉촉해집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복지사업에 감탄하기보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에 감동하게 함이 발전입니다.

비교 : 복지야성 ‘전문가주의와 자연주의’

3. 사회사업 이상 연구 방법

1) 실용성

① 근본을 밝혀 그로써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본 없는 이상엔 믿음과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없으면 이상과 실무는 따로 놀게 됩니다.

②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실무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하기 어려워서 이상과 실무가 따로 놀게 됩니다.

③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으로써 언제 어디서 어떤 사업으로든 얼마만큼 이룰 수 있을 만한 이상, 이루고 또 이루어도 여전히 바라보고 나아가갈 만한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2) 사람다움, 당사자

① 사회사업에서 사람다움은 사회사업 도움으로 어떤 복지를 이루는 과정 ‘그때 그 일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입니다.

사회사업 이상은 ‘과정’ 너머의 지향이라 ‘복지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사람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사업 도움으로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 밖에서 사람답게 사는 문제는 사회사업 소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정 너머의 사람다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조 : 29쪽 ‘자주성의 한계’

② 사회사업 이상은 특정 당사자를 넘어 사회적 약자 일반에 적용할 속성,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대신 ‘약자, 누구나’로 표현합니다.

4. 사회사업 이상과 사회사업의 가치¹⁾

1) 약자와의 공생성, 이는 정의로운 사회의 핵심 속성입니다. 사회정의의 본질입니다.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라야 사람 사는 사회라 할 수 있고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약자도 살 만하게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게 하는 일, 사회사업은 사람 사는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빈부 격차와 불평등이 심한 시대, 약자를 소외시키고 힘들게 하는 세상에 더욱 절실히 지는 정의! 그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2) 이웃과 인정은 사람 사는 사회의 생명력입니다. 인간성의 본질입니다.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사람 사는 사회라 할 수 있고 인간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웃과 인정을 살리는 일, 사회사업은 인간 세상을 지키는 일입니다. 인간적 사람살이를 잃어 가고 인간 소외 그림자가 짙어 가는 시대에 더욱 절실히 지는 인간성! 그 인간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회정의를 세우고 인간성을 살리는 일, 이는 우리의 젊음을 바칠 만한 일입니다. 인생을 걸 만한 일입니다. 사회사업의 이런 가치에 대한 의식과 믿음이 사회사업하는 동기이고 저력입니다.²⁾

1) 사회사업 가치는 사회사업에 유용하거나 바람직한 ‘당사자와 지역사회 의 속성’이고, 사회사업의 가치는 사회에 또는 사회사업가 자신에게 유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회사업의 속성’입니다.

2) 세상은 정의를 버리고 인간성을 삼키며 빠르게 역행하는 형세입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정의를 붙잡고 비인간화에 맞서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사업이 인간 의식을 살리고 희망과 용기를 주어 인간 세상을 지켜 낼 겁니다. 인류를 구할 겁니다. 참조 : 복지소학 ‘임중도원’

사회사업 철학

이상을 실현하는 데도 당면 복지를 이루는 데도 옳은 길 ‘정도’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철학은 그 길에 대한 생각입니다.

철학이 없으면 어찌 바르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세에 쫓기거나 명리를 좇아 이리저리 흔들릴 겁니다. 바르게 잘 가고 있는지 확신은커녕 확인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¹⁾

이러므로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옳게 행하려는 정신 또는 원칙으로 삼는 생각입니다.

철학한다 함은 옳은 길 ‘정도’를 탐구하고 정도로 행하는지 성찰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밝힌 사회사업 철학은 사회사업 옳게 행하려는 정신에서 사회사업 정도를 탐구하고 정도로 행하는지 성찰하여 사회사업 원칙으로 삼게 된 생각입니다.

1) 사회사업 이상과 철학 그 뜻이 분명하고 그 이상과 철학대로 뜻있게 잘하고 있음을 확인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진되지 않을 저력도 타성에 젖지 않을 열정도 이런 확인과 확신에서 나옵니다.

어디로 가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뜻있게 잘하고 있음을 확신은커녕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어찌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겠습니까?

참조 : 복지야성 ‘소진과 타성’

1. 보이지 않게 합니다.

1)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복지사업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면

사회사업가는 빛나는데 당사자는 구차해 보이거나 사회사업가가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당사자가 자존심 체면 품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애 같은 노릇, 약자 노릇’ 하기 쉽습니다.

2)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고 높아집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자존심 체면 품위가 살고 당당해집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고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이게 합니다. 실제로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¹⁾

참조 : 22쪽 각주 3) ‘복지사업’, 67쪽 ‘사회사업 방법의 첫째 조건’

1) 복지를 이루는 주체, 수단, 자리에 따라 좌우됩니다.

① 주체 : 사회사업가가 복지를 이루어 주면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이루게 하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② 수단·자원 :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면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당사자나 사회의 것으로써 이루게 도우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③ 자리·관계 :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밖에서 후원자나 봉사자로 돕게 하면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저마다 제 자리에서 보통의 사회적 관계로 돕게 하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2.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흐르게 합니다.

1) 우물과 시내는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땅을 살리고 못 생명을 기릅니다. 사람들이 어울립니다. 소식 지혜 위로 격려 자원을 나눕니다. 놀거나 쉬기도 합니다. 물뿐 아니라 모래와 돌도 얻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물을 모아서 수도를 통해 급수하니 우물이 마르고 시내가 죽어 갑니다. 그 좋은 기능 다 사라집니다.

2) 지역사회도 그러합니다. 지역사회에는 이웃 우물과 인정 시내가 있어 온갖 복지를 이루고 누립니다.

그런데 복지 저수지에 모아서 복지 수도를 통해 제공하다 보면, 복지 우물이 마르고 복지 시내가 죽어 갑니다. 이웃 우물과 인정 시내에 있던 온갖 복지 기능이 사라집니다.¹⁾

이러므로 복지 저수지 복지 수도에 공들이기보다 지역사회 복지 우물과 복지 시내 살리는 데 주력합니다.

무너진 우물 고쳐 짓거나 새로 만들고 이리저리 물길을 내어 복지가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샘솟고 굽이굽이 돌아 흐르게 합니다.

참조 : 24쪽 '사회적 복지'

1) 이것저것 나누거나 빌려 주거나 함께하거나 도와주던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약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문제로 복지 수도에 더 비싼 대가를 치르며 더 자주 더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욕심 낭비 오용 남용 악용 시기 원망 분노 불신 다툼을 부르기도 합니다.

3. 바탕이 살게 합니다.

1) 문제나 욕구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이 문제만 아니라 다른 때 다른 문제나 욕구, 다른 사람의 복지까지 두루 대응할 수 있는 근본책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살리는 겁니다.

① 자주할 수 있는 주체 의식과 역량,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과 관계망, 이것이 당사자의 복지 바탕입니다.

②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 특히 약자와의 관계와 소통, 이것이 지역사회 복지 바탕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이 복지 바탕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고 지탱하며 문제의 근원을 막고 온갖 복지를 이루는 근본책입니다. 참조 : 복지소학 ‘방기원 치기본’

2)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놓아두고 사회사업가 쪽 지식 기술 재화로써 문제나 욕구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① 당사자는 주체 의식과 역량이 약해지고 자기 삶을 잃어 갑니다. 갈수록 구차해집니다. 사회성과 관계망이 줄어들고 지지체계가 허술해집니다. 갈수록 취약해집니다.

② 지역사회는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들고 정겨운 사람살이를 잃어 갑니다. 갈수록 삭막해집니다.

③ 사회사업가는 부담이 늘고 재미와 감동을 잃어 갑니다.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참조 : 77쪽 ‘평지풍파’

이러므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되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4. 보편적이게 합니다.¹⁾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 수단을 이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고, 차츰 더 다양한 일반 복지 수단을 더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돕습니다.

약자 전용 복지 수단, 그거라도 있으니 고맙고 그것마저 없으면 아쉬울 겁니다. 다만 전용 복지 수단을 우선 또는 주로 사용하여 돕다 보면 일반 복지 수단 쪽과 약자가 이를 핑계로 서로 기피하기 쉽습니다. 자칫 약자가 사회에서 배제 소외되고 심하면 가족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전용 복지 수단을 활용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 평범하게 합니다.

그 사회 그 연령대의 여느 사람처럼 복지를 이루고 누리게 돕습니다. 복지를 이루고 누리는 환경 수단 도구 방법 형식 명칭 조건 절차 수준을 별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거나 열등하거나 문제 있거나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 인상을 만들거나 굳히거나 확대·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아상, 자존감, 구실의 격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²⁾

1) ‘보편적이게 합니다. 평범하게 합니다.’ 이는 특히 시설 입주자, 장애인, 소수자를 도울 때 절실한 ‘반차별 철학’입니다.

2) 시설 입주자도 되도록 시설 바깥 여느 사람처럼 생활하게 돕습니다.

주거 식사 복식 단장, 하루 일과를 비롯한 생활 흐름, 인간관계와 사람 구실, 이성 교제, 호칭, 정치 경제 사회 활동, 학교생활 공부 교우 방학활동, 직장생활 휴가 애경사 회식, 신앙생활 문화생활 취미활동, 운동 독서 평생학습, 생일잔치 나들이 여행, 미용 목욕, 집안일을 여느 사람처럼 하게 돕습니다.

사회사업 주안점¹⁾

1. 생태

생태는 당사자와 환경 또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입니다.

1) 당사자와 돌레 사람 사이의 생태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돌레 사람이 어울려 사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돌레 사람이 함께하게 주선하고, 복지를 이루는 일로 당사자와 돌레 사람이 어울리게 합니다.

2) 약자와 일반 복지 수단 사이의 생태

사회사업은 약자와 일반 복지 수단 사이의 생태에 주목합니다. 약자가 일반 복지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일반 복지 수단이 약자 접근성을 갖추게 합니다. 약자와 일반 복지 수단 쪽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합니다.

3) 지역사회 사람살이 생태

사회사업은 지역사회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모습에 주목합니다. 이런 저런 복지 활동으로 어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함께 이루고 누리며 서로 돕고 나누는 ‘정겨운 사람살이’를 살립니다.

1) 주안점은 특히 중점을 두어 살피는 점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사회사업 주안점은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생각하고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에 따라 도우려 할 때 특히 중점을 두어 살피게 되는 점입니다.

2. 강점

사회사업에서 강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는 것’입니다. 자원이라고도 합니다.

1) 당사자 쪽 강점

당사자의 경험 지식 재주 물질, 희망 의지 저력, 좋아하는 일, 잘했거나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둘레 사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강점입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 쪽 강점에 주목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당사자 쪽 강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대상화하기 쉽습니다.

2) 사회사업가 쪽 강점

사회사업가의 지식 기술, 복지기관의 예산 장비 시설, 후원금품과 봉사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해치기 쉽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이 약해지고 평지풍파 일어나기도 합니다.

참조 : 43쪽 ‘복지 바탕’, 77쪽 ‘평지풍파’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 복지를 이루어 주면 당사자가 낮은 형세이거나 구차해 보이기 쉽습니다. 자존심 체면 품위 지키기 어렵습니다.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하릴없이 그저 애 같은 노릇, 환자 노릇 하기 쉽고 심하면 거지 꼴 되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가 쪽 강점 활용을 삼갑니다. 활용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당사자가 활용하게 합니다.

3. 관계

1) 관계는 ‘사람다움 사회다움’의 핵심 요소입니다.

2)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고 지탱하는 근본입니다.

당사자의 인간관계는 지금 이 일뿐 아니라 다른 때 다른 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이고, 지역사회 이웃 관계는 이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는 바탕입니다.

참조 : 복지야성 ‘관계 영역’

3) 빈약한 관계는 온갖 문제의 근원이고, 좋은 관계는 온갖 복지의 바탕입니다.

관계만으로 문제나 복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으나 관계야말로 문제나 복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참조 : 복지소학 ‘견’

4) 사회사업은 관계를 돕는 일이고 관계로써 돕는 일입니다.

사회사업 핵심 소관인 선린의 복, 공생성, 사회적 복지, 사회적 사업, 어느 것으로 보나 사회사업은 관계를 돕는 일이고 관계로써 돕는 일입니다.

참조 : 복지야성 ‘사회사업 본분’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관계에 주목합니다.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에 주목합니다. 이 관계를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고, 복지를 이루는 일로 이 관계를 살립니다.

뒷이야기

1. 생태 관점 문제와 해결책

1) 문제

당사자의 가난 질병 노화 독거 중독, 정신·신체 기능의 손상·결여, 환경의 위협 재해 장애 같은 한쪽 조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 조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쪽 조건이 나빠도 다른 쪽이 감당할 만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쪽과 저쪽 사이의 좋지 않은 생태 현상입니다. 이쪽과 저쪽이 맞지 않아서 또는 상대와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 고통 갈등 따위의 어려움입니다.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는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장애, 곧 당사자와 환경이 맞지 않거나 당사자의 내부 요소들(예: 욕구와 역량)이 서로 맞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좁게는 정신·신체 기능이 여느 사람과 다르거나 손상·결여되어 의학적으로 장애인이라 하는 사람이 그 기능이 필요한 환경이나 과업을 만날 때 겪는 어려움입니다.¹⁾ 참조 : 14쪽 ‘장애 개념’

1) 대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해결책

문제를 생태 현상으로 보면 해결 경로를 여러 갈래로 잡을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와 환경 가운데, 당사자 쪽에 우선 주로 개입할 수도 있고 환경 쪽에 우선 주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② 약점과 강점 가운데, 약점을 다스려 해결할 수도 있고 강점을 살려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약점은 문제에 취약한 점, 문제를 야기 유지 악화하는 조건입니다. 약점을 다스린다 함은 이를 해소 완화 보완 예방 억지한다는 말입니다.

강점은 문제 해결에 이롭거나 쓸모 있는 것입니다. 강점을 살린다 함은 이를 회복 개발, 유지 활용, 개선 강화한다는 말입니다.

③ 욕구와 역량 가운데, 욕구를 낮추어 해결할 수도 있고 역량을 높여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④ 공유영역과 양쪽의 바탕 가운데, 공유영역의 문제 현상에 직접 대응할 수도 있고 양쪽의 바탕을 살리는 데 주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개입하든 사회사업은 결국 이쪽과 저쪽 사이의 생태를 좋게 하는 일입니다. 이쪽과 저쪽 사이의 상호작용을 좋게 하는 일입니다. 이쪽과 저쪽이 잘 어울리게 하는 일입니다.

참조 : 18쪽 '생태 관점 사회사업'

2. 생태와 안전장치

1) 당사자와 지역사회 생태에 미칠 영향에 주의합니다.

필요성 장점 효용만 내세워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돕는다지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독이 될 수 있고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참조 : 복지야생 '복지기계' 편

이러므로 안전장치를 생각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 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 ②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 ③ 소박하게 복지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편이 부작용이 덜할 뿐 아니라 수월하고 효율적이고 평안하고 오래갑니다.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에 잘 들어맞습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잘 세울 수 있습니다.

2) 업계의 생태를 살펴보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분야의 사업 생태 곧 복지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봉사단체 공공기관의 서비스 생태를 헤아리고 시장 생태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 생태를 헤아리지 않으면 동종·유사 사업 주체들과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곳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견제를 받기도 합니다.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도 있습니다.

3.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

1) 강점과 약점

사전에서는 강점을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이라 하지만 사회 사업은 남과 비교하길 꺼립니다. 사회사업에서 강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는 것’입니다. 자원이라 하기도 합니다.

약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불리하거나 문제에 취약한 점, 문제를 야기 유지 악화하는 조건입니다. 가난 질병 노화 독거 결손 중독, 기능 손상 이나 결여, 특이한 성격 외모 행동 같은 조건이 약점이 되곤 합니다. 약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약점과 문제를 통용하기도 합니다.

사회사업에서 강점과 약점을 가르는 기준은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으면 강점이고 불리하거나 해로우면 약점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일에 따라 강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2) 장점과 단점

장점은 좋은 점이나 잘하는 점, 어떤 가치관이나 눈높이에서 그렇다고 보는 점입니다. 흔히 장점을 살려 복지를 이루는데 그러면 장점이 곧 강점이 되는 셈이라, 장점과 강점을 통용하곤 합니다.

단점은 좋지 않은 점 또는 못하는 점, 어떤 가치관이나 눈높이에서 그렇다고 보는 점입니다. 단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단점과 문제를 통용하기도 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가르는 기준은 보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눈높이입니다. 좋거나 잘한다고 보면 장점이고, 좋지 않거나 못한다고 보면 단점입니다. 상대적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사업가는 그 판단이나 언급을 삼갑니다.

4. 대안 강점

1) 적극적 복지사업이 대안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이루고 누리는 경험이, 적극적 복지가, 문제를 해소 완화 예방 억지하거나 문제를 감당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희석 상쇄 무력화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하는 겁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은 이와 같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뿐 아니라 다른 좋은 것을 이루고 누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양쪽으로 이롭거나 쓸모 있는 대안 강점입니다. 참조 : 23쪽 '적극적 복지사업'

2)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당사자에게 새로운 강점이 생겨납니다.

인격적으로 귀하게 대접받는 경험, 주체로서 무엇인가 이루어 내는 경험 그 성취감, 그로써 칭찬 감사받고 그로써 얻는 자존감, 이런 강점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저력이 되고 복지를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3)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지역사회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강점이 생겨납니다.

남을 돕는 경험, 그로써 느끼는 보람 재미 감동, 사람 사는 맛, 좋아지는 이웃 관계, 애정 욕구 자존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충족, 이런 강점이 생깁니다. 이것이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약자도 살 만하게 하는 바탕이 되고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하게 하는 복지 간접 자본이 됩니다.

5. 강점과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당사자가 힘 있게 하기’입니다.

여기 ‘힘’은 ‘역량’보다 ‘권한 또는 구실이나 지위’에 가깝습니다.

당사자가 힘 있게 한다 함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한다, 당사자가 높아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당사자를 세운다는 말입니다.¹⁾

1) 당사자의 강점과 임파워먼트

당사자의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하면 당사자가 힘 있게 됩니다. 당사자의 강점과 주인 노릇이 당사자를 버젓하게 하고 빛나게 합니다.

2) 사회사업가의 강점과 오버파워먼트

오버파워먼트는 ‘당사자보다 힘 있게 되기’입니다. 사회사업가의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면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보다 힘 있게 됩니다. 사회사업가의 강점과 활약이 당사자를 가리고 무색하게 합니다. 구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1) 역량 강화, 권한 부여

① ‘역량 강화’는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힘 있게 하는 방법으로도 올 때 생기는 부수 효과 또는 별개 사업의 목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량을 강화하면 당사자가 힘 있게 되는 데 유리할 수 있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역량이 부족해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힘 있게 됩니다.

② ‘권한 부여’는 당사자가 권한을 갖는 데 주인 노릇 하지 못하게 권한을 박탈하는 처사입니다. ‘디스임파워먼트’에 가깝습니다. 사회사업가는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6. 강점과 문제

1) 임의로 일을 만들 수 있을 때

소극적 복지사업은 삼갑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을 별입니다.

참조 : 23쪽 '소극적 복지사업과 적극적 복지사업'

사회사업가 쪽 강점 활용은 삼갑니다. 당사자 쪽 강점을 활용합니다.

참조 : 46쪽 '당사자 쪽 강점과 사회사업가 쪽 강점'

① 당사자 쪽 '강점'으로 적극적 복지사업을 하거나 적극적 복지사업을 '당사자 쪽' 강점으로 합니다.

② 소극적 복지사업을 '당사자 쪽' 강점으로 합니다. 당사자의 문제를 다루되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돕는 겁니다.

③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활용하는 일은 적극적 복지사업이라도 삼갑니다.

④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써 당사자의 문제를 다루는 소극적 복지사업은 더욱 삼갑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 소극적 복지사업 벌이기 또는 당사자 쪽 '문제'에 '사회사업가 쪽' 강점 들이대기, 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참조 : 복지야성 '강점 관점, 강점 중심'

2)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

① 약점을 다스리기보다 강점을 살리는 데 주력합니다.

다만 사회사업가 쪽 강점, 직접 강점은 조심합니다. 당사자 쪽 강점, 간접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돕습니다.

간접 강점은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데 문제를 해소 완화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해 줍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이 대개 그러합니다.

직접 강점은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는 강점입니다. 소극적 복지사업이 그러합니다. 문제를 두드러지게 하고 낙인을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활용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참조 : 23쪽 '적극적 복지사업', 48쪽 '생태 관점 문제와 해결책'

② 자신 없으면 건드리거나 대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는 건드리면 덧납니다. 자존심 분위기 관계를 해칩니다. 어떤 문제는 대응할수록 커지거나 다져지거나 교묘해집니다. 모르는 척하고 짐짓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일, 문제를 희석 상쇄할 만한 단점을 벌이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 복지야성 '문제를 따돌리기'

어떤 문제는 누가 다루어도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1) 붙들고 싸워봤자 해결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기 십상입니다. 애매히 부담감에 짓눌리거나 무력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다른 일을 못하거나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건드렸거나 대응했다면, 차츰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퇴로나 출구를 찾는 편이 좋을지 모릅니다.

1) 당사자도 잘 압니다. 그래도 이야기한다면, '너무 힘들다, 누군가 내 이야기 좀 들어 주면 좋겠다, 내 맘 좀 알아주면 좋겠다, 잠깐이라도 곁에 누군가 좀 있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쭙잖은 기법 지식 정보로 진단 분석 상담 조언하려 들면 어찌될까요?

③ 문제와 사람

오랫동안 낙인 눈총 구박 미움 잔소리 멸시 천대를 받아 왔을지 모릅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받은 관심(?)이나 개입이, 그로 인한 상처가, 이미 족할지 모릅니다. 숨 쉴 곳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또 문제를 보고 덤벼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회사업가의 처지나 역량으로 어찌겠습니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도와주려고 그런다지만,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제도 오늘도 문제만 이야기하고 문제만 다루면 당사자도 가족도 힘듭니다. 문제 나뉘고 다루기 나뉘이지만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고 다른 면도 봐 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을 찾아 기뻐하거나 칭찬 감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강점 가능성을 찾고 잘할 만한 일 좋은 일을 찾아 귀하게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그로써 문제를 희석 상쇄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④ 마냥 무시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는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공감해 주고 그 처지 심정을 알아 주면 얼마쯤 풀어집니다. 그저 물어봐 주기만 해도, 의논하기만 해도, 말없이 곁에 있어 주거나 안아 주기만 해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문헌을 두루 찾아보거나 전문가들에게 묻고 의논하다 보면 좋은 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는 사회사업가 쪽에 원인이 얼마쯤 있을지 모릅니다. 서비스 환경·내용·방법·태도 따위에 대한 도전행동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시설에서는 밀집 주거, 고정 주거, 단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불거지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 : 98쪽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헤아려 각각 알맞게 조치할 일입니다.

7. 관계의 양면

1) 관계가 있으므로 오히려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해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괴로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피하여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말입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이런 관계까지 끌어안고 부대끼며 산다는 게 아닐까요?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이런 관계조차 없는 사람의 삶은 거의 절망적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웃이 없다는 겁니다. 고운 정이든 미운 정이든 정붙일 데가 없다는 겁니다. ‘혼자’라는 겁니다.

2) 관계를 살리는 일 곧 관계를 회복 개발, 유지 활용, 개선 강화하는 일도 부작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버리고 달리 무엇으로 사람을 도울까요? 사회사업가가 말합니다.¹⁾

관계가 약해졌으니 관계 대신 복지제도 복지시설 복지사업으로써 돕자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계를 아주 허물어 버리거나 퇴화시켜 결국 복지 바탕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사회는 약자가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관계를 버리고 인공복지로 연명하는 사회 그 자체가 이미 죽은 사회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1) 사회사업은 관계로써 돕는 일입니다.

다만 무턱대고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문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문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좋지 않은 관계를 피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방법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입니다.

당사자에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이렇게만 해도 잘되고, 이렇게 해야 잘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다움 사회다움과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 꼭 들어맞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사업 실재가 근본에 들어맞아야, 사회사업 제대로 했다, 제대로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높아지고 버젓해집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돌아갑니다.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그 모습 그 이야기에 감동하여 ‘그래, 이래야 사람이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고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높일 때, 사회사업 잘했다, 잘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사업이 수월하고 편안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니 사회사업가가 하는 일은 그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일에 기록이나 행정 사무를 더할 뿐입니다.

당사자와 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니 후원금이나 사업비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원금이나 사업비를 받고 쓰고 뒤처리하는 행정 사무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1. 인사

1) 당사자에게 인사합니다.

‘당사자의 곳’에 찾아가 인사합니다. 가족을 비롯한 둘레 사람, 당사자가 이용하는 복지 수단에 관련된 사람까지 찾아가 인사하면 더 좋습니다. 인사하다 보면 ‘사람’을 알게 됩니다. 할 일이 보이고 살려 쓸 강점이 보입니다. 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2) 지역사회에 인사합니다.

기관·부서·사업과 관계있는 사람부터 찾아다니며 인사합니다. 지역 유지나 마을 어른, 주민 지도자, 인근 기관 사회사업가에게 두루 인사합니다. 인사하다 보면 사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판세를 알게 되고 지역 정서와 문화를 알게 되고 지역에서 처신할 바를 알게 됩니다. 살려 쓸 강점이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이 그려집니다.

3) 인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습니다.

① 인사 받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존심 염치 체면 예의 품위 차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 합니다. 사람 구실, 주인 노릇, 어른 노릇 하게 됩니다. 이해 옹호 협력 늘어나고 오해 비난 견제 멀어집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지역 유지나 어른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② 인사 다니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이 살고 이런저런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인사 자체가 복지가 되기도 합니다. 인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 사회사업 실마리이고 밑천입니다. 지혜 열정 용기 저력 자신감 여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4) 신입 전입은 인사 다니기 좋은 명분입니다. 한두 달쯤 인사만 다녀도 좋겠습니다. 부서나 업무가 바뀔 때도 좋은 기회입니다.

2.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철학적이고 방법입니다. 그 뜻이 깊고 실익이 무궁합니다.

첫째,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철학’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 그 사람다움을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사람답게 도우려는 정신의 발로입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자주하는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방법’입니다.

사람에게는 복지 본성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자주하려는 마음, 자존 욕구가 있고 밖으로는 남을 도우려는 마음, 애정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복지 역량과 자원이 있습니다. 스스로 돕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물질 재능 경험 정보 지식 지혜 체력 시간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 본성과 역량과 자원이 ‘복지 자연력’이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을 회복 개발 유지 개선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그 자연력으로써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참조 : 복지야성 ‘자연주의 사회사업’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복지를 넉쿨째 불러들이는 마법입니다. 복지가 넉쿨처럼 뻗어 나가게 하는 요술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의 지혜 지식 정보 기술 재화가 따라오고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됩니다. 돈은 물론이고 공간도 도구도 재료도 해결됩니다. 일이 술술 풀립니다. 신납니다. 감동 감사가 넘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사회사업에 문리가 트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할지라도 한 명 두 명 만나다 보면, 한두 다리 건너다 보면, 이내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되고, 물을 것 묻게 되고 의논할 일 의논하게 되고 부탁할 것 부탁하게 됩니다. 보아야 할 것 보게 되고 들어야 할 것 듣게 되고 알아야 할 것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관계와 조합이 보이고, 여기저기 길이 보이고, 이쪽저쪽 연결고리가 보이고, 이런저런 일이 그려집니다. 이리저리 주선하고 소통시키고 수습할 수 있게 됩니다.

갈수록 요령이 늘고 재미도 더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당사자에게 이런저런 강점과 가능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 도우려는 마음과 도울 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궁한 자원과 기회와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다지 캐는 광부처럼, 황금 어장 만난 어부처럼, 당사자와 지역사회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이 살아나서 다음에는 더 쉽게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수록 무슨 일이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더 쉬워지고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는 사회사업이 편안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힘을 적게 들고 실효는 많이 얻는 방법입니다.

1) 묻기

① 개별 상담, 사례관리

어떻게 해 왔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당사자의 경험 노력, 희망 구상을 묻습니다.

활용한|할 자원 강점, 도와준|줄 사람 함께한|할 사람을 묻습니다.

두루 살펴보고 궁리해 보게 합니다. 돌레 사람과 의논해 보게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 의사를 묻되 잘 알고 판단 선택 대답할 수 있게 합니다. 두루 알아보고 검토 궁리 의논해 보게 합니다.

③ 집단 활동과 행사

당사자들로 실행 조직을 만들어¹⁾ 두루 알아보고 궁리하고 의논하게 합니다.²⁾

당사자와 지역사회와 사회사업가가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그 가운데 ‘선택’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잘 알고 결정하게, 두루 알아보고 서로 의논해 보게, 여러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함이 잘 묻는 겁니다.

1) 할 만한 사람에게 따로 제안하거나 공개 모집합니다.

2) 당사자들이 알아보고 검토 의논하여 선택 계획 준비 진행할 일은 그렇게 하게 맡깁니다. 당사자 의견을 알아보고 사회사업가가 결정 계획 준비 진행 해결해 줄 것처럼 물어보지 않습니다.

2) 의논하기

당사자 의견을 존중한다고 당사자가 원하면 다 좋다는 식으로 그저 따를 수는 없습니다.¹⁾ 참조 : 139쪽 ‘자기 결정권’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기관의 정책과 형편, 가용 자원과 기회비용,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 권한과 책임, 지식 정보 경험, 당사자나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사업은 그저 묻기만 하지 않고 또한 의논합니다.²⁾

당사자와 사회사업가의 의견이 다를 때는

① 당사자와 다른 의견을 내세우거나 당사자 의견과 다르게 도와야 할 만큼 당위성이나 실익이 있을지 헤아립니다.

② 당사자와 다른 의견을 내세우거나 당사자 의견과 다르게 도와도 될 만한 관계인지 헤아립니다.

③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되 사회사업 근본과 현실을 헤아려서 마땅하다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따릅니다.

④ 사회사업가 의견을 말하되 알아듣게 설명하거나 둘레 사람과 문헌을 통해 알아보게 하여 당사자가 양해 수긍할 때 실행합니다.

지역사회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합니다.

1)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듯, 의논하지 않고 묻기만 하는 건, 애 취급하거나 아첨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묻기만 하고 의논하지 않으면 그 효용은 ‘물어보고 했다’고 시비나 책임을 면피하는 수준에 그치기 쉽습니다.

2) 제안 설명하고 질충 타협 설득하기도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비판 간섭 혼계 지시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은 삼갑니다. 필요하면 더욱 정성스럽게 신중히 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3) 부탁하기

① 당사자에게 부탁하기

첫째, 당사자가 하게 부탁드립니다. 과정이나 단계를 나누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드립니다. 본을 보여 주고 같이 해 본 뒤에 다시 부탁하기도 합니다.

둘째, 당사자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합니다.

셋째, 대신 해 준다면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② 지역사회에 부탁하기¹⁾

첫째, 당사자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드립니다.²⁾ 참조 : 21쪽 ‘당사자의 지역사회’

둘째,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김에 같이 하거나 조금 더하게 부탁합니다.

셋째,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오래갑니다. 그래야 저마다 제자리에 충실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살이 바탕이 튼실해지고 복지도 자연스러워집니다.

1) 먼저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의논합니다. 되도록 당사자가 하게 돕습니다. 당사자 모르게, 당사자의 동의 요청 없이, 지역사회에 부탁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은지 거듭 따져 볼 일입니다.

2) 그 밖의 사람에게 하는 부탁은 동냥하는 꼴이기 쉽습니다. 그 밖의 사람이 도울 때는 흔히 당사자를 불쌍한 사람 따위로 구차하게 대상화하여 후원 봉사한다 합니다. 그러므로 그 밖의 사람에게라도 부탁해야 한다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3. 감사

1) 감사는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사자나 지역사회의 수고 도움 나눔 배려 응원, 그 기여와 성과를 알아주는 겁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공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공이 돌아가야 사회사업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서로 할 일이지만 당사자와 지역사회 쪽에 돌리는 감사가 많아야 사회사업 잘한 겁니다.

2) 감사는 잘했다 고맙다 표현하는 겁니다.

① 무엇을 칭찬 감사하는지 구체적 ‘이야기’를 담아 표현함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담은 엽서나 편지는 어떨까요?

② 소박하게 표현합니다. 소박하다면 식사나 다과 대접도 좋고 선물도 괜찮겠습니다.

③ (어른에게는) 간접 표현이 좋습니다. 간접 표현은 관계가 대등하기 바라거나 오히려 겸비하려는 자세에 가깝습니다.

④ 둘레 사람에게 알려 칭찬 감사하게 하는 우회 표현도 좋습니다. 둘레 사람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⑤ 당사자가 감사하게 돕습니다. 인상이 좋아지고 둘레 사람과의 관계 소통이 향상됩니다.

3) 감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습니다.

감사 받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또 하게 되고 더 하게 됩니다. 갈수록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4) 그때그때 감사하고 마칠 때 감사합니다. 기관을 떠날 때, 부서나 업무가 바뀔 때, 기관 기념일 명절 연말연시도 좋은 기회입니다.

4. 약자일수록 더욱

약자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더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나 지적 약자, 치매 증상이나 취기가 있는 사람,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1)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압니다. 오래 도움을 받다 보면 느느니 눈치이고 약자일수록 더 예민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 사회사업가의 언행이 약자의 언행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특히 지적 약자 시설에서는 사회사업가의 언행이 입주자에게 곧잘 복사됩니다.

3) 사회사업가의 언행이 약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사람들이 당사자를 귀하게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참조 : 113쪽 '복장'

4)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다 보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에서 좋은 기운이 나옵니다. 그 기운이 사람을 움직이고 일을 이룹니다.

이러므로 약자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더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참조 : 70쪽 '경청'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의사소통 방식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의사소통 수단을 두루 탐색 적용해 봅니다.

뒷이야기

1. 사회사업 방법의 조건

1) 당사자가 버젓해지고 당사자의 품격 자존심 염치가 살고 당사자에게 칭찬 감사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그러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니 당사자가 버젓해집니다. 당사자의 품격 자존심 염치가 삽니다. 당사자에게 칭찬 감사 돌아갑니다.

2) 사회사업 동료들이 수월하고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감동 감사하며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그러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니 수월하고 여유롭습니다. 복지를 이루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에 감동 감사하게 됩니다. 사회사업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참조 : 복지야성 ‘현실론’

3) 좋은 뜻으로 돕지만 약인지 독인지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뒷일을 생각합니다. 안전장치를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없거나 적어 보이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그러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소박하게 복지를 이루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참조 : 50쪽 ‘사회사업 안전장치’

4) 쉽고 짧은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회사업 방법, 알고 나면 한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사회사업 방법을 생각합니다.¹⁾

한두 마디만 기억하고 적용해도 좋을 방법, 많아야 세 마디를 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그러합니다. 쉽고 짧습니다. 알고 나면 ‘결연’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연’ 한 마디만 기억하고 적용해도 좋습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이렇게만 해도 잘됩니다.

참조 : 복지소학 ‘결연’

5) 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은 나무의 본성을 살피고 나무의 본성을 따라 나무가 그 본성을 이루게 할 뿐이라 합니다. 훌륭한 목수는 나무가 자란 환경, 나무의 성질, 나무의 생김새, 나무의 빛깔과 결을 살피 그 자연을 따를 뿐, 감히 거스르지 않는다 합니다.

사회사업도 복지의 ‘자연’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복지 본성, 사람 사는 사회의 복지 본연을 생각합니다. 그 본성과 본연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기계를 덜 쓰고 인위를 덜 가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되도록 자연스럽게 복지를 이루는 방법을 찾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그러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본성과 본연을 살립니다. 소박 단순하여 자연에 가깝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로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참조 : 복지야성 ‘복지기계’와 ‘자연주의 사회사업’

1) 꼼꼼히 읽어 주기 바라지만 대충 훑어봅니다. 새겨듣기 바라지만 대충 넘겨드립니다. 거르고 재단하고 통폐합하여 한두 가지 지식이나 생각으로 줄이고 한두 마디 자기 말로 바꾸어 기억합니다.

이런 실정을 헤아려 방법을 궁리합니다. 더하여 일반 대학에서 사회사업 교육을 받고 일반 복지기관의 일선에서 일하는 일반 사회사업가가 이해 기억 적용하기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2. 잘 부탁하기

1) 알아서 하라고 맡겨 버리지 않습니다.

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의논하고 부탁하면 이런저런 시행착오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의논하지 않고 맡겨 버리면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이나 기관 정책에 반할 수 있습니다. 경험 지식 정보가 부족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거들어 줍니다. 때때로 살펴서 조정 증재하거나 칭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한 처사에 가깝습니다. 남에게 일을 미루는 꼴로 보이거나 사람을 이용하려 든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2) 자원의 탐색부터 개발 활용 평가까지 또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준비 진행 평가까지 반드시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다 해야 하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3) 부탁하다 보면 문리가 트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할지라도 부탁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요령이 생기고 재미가 늘어 갑니다. 부탁할 만한 일을 부탁할 만한 때에 부탁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3. 경청

1) 사회사업과 경청

듣는 자세, 이로써 사회사업가의 격이 크게 좌우됩니다.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특히 약자가 말할 때 예를 갖추어 정성껏 잘 들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회사업가이겠다 싶습니다.

경청만 잘해도 사회사업 괜찮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방법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인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지라도 경청하지 않으면 잘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은 잘 들어야 잘 됩니다.

2) 경청하는 법

① 말하는 사람이 잘되기 바라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밝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눈을 맞추고 듣습니다.

② 모니터를 보거나 자료를 이리저리 넘겨보지 않습니다. 기록하기보다 듣는 데 집중합니다.

무슨 소리가 나도, 누가 일어서거나 드나들거나 지나가거나 다가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③ 말하는 사람이 약자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더 정성스럽게 경청합니다. 어린아이, 지적 약자, 치매 증상이나 취기가 있는 사람, 어눌한 사람이 말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참조 : 66쪽 ‘약자일수록 더욱’ | 복지야성 ‘대학생’ - ‘경청 훈련’

4.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데 잘되지 않으면

1) 마음과 언행을 다듬습니다. 성의정심과 경청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화예절, 용모 복장 태도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참조 : 복지소학 '성의정심', '언행'

2) 때를 살핍니다. 때가 아닌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언짢아하거나 귀찮아합니다.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응합니다.

사회사업에서 '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럴 만한 관계가 되기 전에는 삼갑니다.

다만 명분과 진정성은 때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뜻을 잘 설명하고 '성의정심'으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바로 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 이해 의지 역량의 수준, 심리 상태, 분위기를 살펴 '때'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참조 : 복지소학 권분 편 '사민이시'

3) 검토 궁리 의논해 보거나 알아볼 시간이 필요한지, 설명이나 정보 지원이 필요한지, 헤아려 알맞게 조치합니다. 잘 모르면 판단 선택 대답 협조하기 어렵습니다. 참조 : 62쪽 '묻기'

4) 과업을 세분하고 단계를 나누어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 준비된 것부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5) 하는 김에 같이 하거나 조금 더하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합니다.

6) 다른 때 다른 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 봅니다.

참조 : 복지야성 '십중팔구가 호응하지 않을 때', '조건부 사고와 방법적 사고'

5. 당사자 중심

1) 당사자의 곳에서

당사자의 삶터에서, 당사자의 실제 생활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2) 당사자으로써

①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합니다.

② 당사자의 것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3) 당사자의 삶이게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이게 합니다. ‘내 일이다. 내가 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¹⁾

1)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으로 보이게 하면 당사자가 빛나고 높아집니다. 당사자에게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자존심 체면 품위가 살고 당당해집니다. ‘그래, 이래야 사람이지!’ 하게 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편안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뜻을 내려놓으면 금수에 가깝다 했습니다. 세련되고 쾌적하고 풍족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그저 생존 연명하는 신세라면 구차할 뿐입니다.

그러니 어설피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고 삶이게 합니다. 남에 의한 생존 연명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이고 생활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6. 지역사회 중심

1)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서,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2) 지역사회로써

- ① 지역사회가 함께하여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 ②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¹⁾

3)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합니다. ‘우리 일이다, 우리가 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²⁾

1) 지역사회의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는 일은 문제의 근원을 막고 온갖 복지를 이루는 근본책입니다. 지역사회는 문제를 억지 완충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고 복지를 이루는 바탕입니다.

지역사회를 놓아두고 복지시설 예산 인력으로 복지를 이루어 주는 건 무모한 행위입니다. 불 위에 쉴을 던짐과 같습니다. 잠시 꺼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으나 문제를 키웁니다.

2)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하면 지역사회가 빛납니다. 지역사회에 공이 돌아갑니다.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 그 이야기에 감동하여 ‘아, 사람 사는 것 같다! 그래,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게 됩니다.

사회사업가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가답게 제구실 잘하려면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참조 : 복지소학 ‘정명’

사회사업가 정체성은 ‘사회사업가는 어떤 존재이며 어찌해야 사회사업가답다 할 수 있는가?’에 생각입니다.

1) 사회사업가 정체성은 사회사업가의 실존에 대한 인식 곧 ‘사회사업가는 어떤 존재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하는 사람 곧 사람들이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사람입니다.

2) 사회사업가 정체성은 사회사업가 노릇의 당위에 대한 인식 곧 ‘사회사업가 노릇은 어떠한가? 어찌해야 사회사업가답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사람, 얻게 하고 주게 하는 사람, 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두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세우는 노릇’입니다.

사회사업 근본에 비추어 마땅히 여기는 사회사업가상이 이리합니다.

1. 주선하는 사람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하게 주선하는 사람입니다.

1) 사회사업가는 아는 것이 많고 재주나 자원이 많아도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자주성과共生성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돋보이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버젓해지고 빛나고 높아지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2) 사회사업은 대개 아는 것이 없고 재주나 자원이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의 지식 재주 자원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와 사회의 지식 재주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자기 지식 재주 자원으로써 해 준다면 그 지식 그 재주나 자원이 그의 그릇 그의 한계입니다. 참조 : 복지소학 ‘떡자불기’

3) 사회사업가의 지식 재주 자원으로써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거나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사업가가 만물박사 팔방미인 노릇 할 수는 없습니다.

2. 거들어 주는 사람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거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1)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꺼져 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비켜, 우리가 해 줄게.’ 해도 될까요?

사회사업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잘 하지 않거나 잘못한다고, 그렇다고 대신 복지를 이루어 주는 노릇이 ‘사회사업가로서는’ 마땅찮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회는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 사는 사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 사회사업가는 꺼져 가는 심지를 돋우고 상한 갈대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지만, 꺼져 간다고 덮어 버리거나 상했다고 꺾어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해지는 것을 막거나 약한 만큼 거들어 주는 사람이지만, 허물어 버리고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3) 대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해 주는 편이 나은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사업가를 ‘대신해서 복지를 이루어 주는 사람, 복지 대행업자’라 할 수는 없습니다.

3. 얻게 하는 사람

사회사업가는 당사자가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1) 사회사업가는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얻어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찾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찾게 돕는 사람이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보거나 배우게 돕는 사람입니다.

2) 당사자의 자원으로써 복지를 이룸이 좋지만 다른 자원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을 얻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당사자가 얻게 함이 좋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함께하여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 여의치 않아서 얻어다 줄 수밖에 없다면 당사자와 의논하여 심부름처럼 함이 좋습니다.

3) 사회사업가가 줄 수도 있습니다. 주는 편이 최선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사업가를 얻어다 주는 사람, 찾아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¹⁾

1) 사회사업가가 주는 노릇 하면, 평지풍파 일어나기 쉽습니다.

① 안 받거나 못 받거나 덜 받는 사람은 배 아프고 아쉽고 섭섭하니 평지풍파이고, 받는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② 받는 사람 가운데 더러는 부끄럽게 여기니 평지풍파이고, 더러는 굽실거리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드니 평지풍파입니다.

③ 주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 자랑하려는 마음이 은근히 일어나니 평지풍파이고, 다음에 또 주어야 하고 더 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기니 평지풍파이고, 비교당하거나 시비에 휘말리니 평지풍파이고, 욕먹거나 위협을 받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4. 주게 하는 사람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가 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1)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의 것을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전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나누게 하는 사람입니다. 참조 : 복지야성 ‘지역 주민이 자원?’

2) 사회사업가를 통해서라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는 받아서 전해 주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사업가를 ‘전해 주는 사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서 전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발하여 가져다가 전달하는 사람은 더욱 아닙니다.

사회사업가가 수도꼭지 노릇 할 수는 없습니다.¹⁾

1) 사회사업가가 모아서 주는 노릇 하다 보면 마치 댐에 저수하여 수도라는 이름으로 급수함으로써 세상의 시내가 마르고 우물이 썩어 버리듯 세상의 복지도 그러할 겁니다. 복지 저수지에 복지가 가득하고 복지 상수도 복지 급수대가 늘어 가지만 지역사회는 복지가 흐르지 않게 될 겁니다.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에 복지가 흐르게 합니다. 사람 사이 관계를 살려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로써 나누게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원을 가져다가 ‘외장형 복지사업’ 만들기보다, 저마다 그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에서 ‘복지 내장형 사람살이’를 이루게 돕습니다.

5. 발로 일하는 사람

사회사업은 발바닥을 통해 옵니다. 사회사업하는 열정 지혜 자신감 저력, 모두 발바닥에서 나옵니다.

발바닥 닳도록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려 쓸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할 일이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이 그려집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 선한 근심과 고뇌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¹⁾

그게 사회사업가이고 그래야 사회사업가입니다.

발바닥 닳도록 다녀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머리가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야 보고 듣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지혜가 생깁니다.

걸음을 멈추면 가슴이 식어 버리고, 가슴이 식으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게 사회사업입니다. 사회사업은 그렇습니다.

사회사업가는 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²⁾

1)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지 않고 안에서 일하다 보면 헛헛해집니다.

인사 보수 복리후생 근무시간이나 다른 직원의 잘못 같은 기관 내부 문제가 크게 들어옵니다. 불평불만 잔소리 험담이 늘어 가고 생각 주장 태도가 부정적으로 되어 갑니다.

2) 사회적 사업으로 사회적 복지를 이루는 사회적 일꾼입니다.

구슬 꿰는 사람

분업화 영향으로, 복지 제도 확대로, 인간 봉사직 증가로, 남을 돕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멀어져 갑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에서 멀어져 갑니다. 전문가나 정부나 시장의 일이 되어 갑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든 전념하지 않으면 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남을 돕는 일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궁리하고 준비하고 종종 적잖은 시간 물질 마음 힘을 써야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일에 나서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한때 여력이 있어 의욕적으로 나설지라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이 아니면 더욱 그러합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다 보면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곧 알게 됩니다. 돕는 사람이나 도움 받는 사람이나 믿기 어려운 시대, 서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돕는 일을 주선하고, 때때로 살펴서 조정 중재하거나 칭찬 감사로 북돋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회사업가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습니다. 그물이 삼천 코라도 버리가 으뜸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자원이 서 말이라도, 이웃이 삼천 코라도, 꿰어서 잘 쓰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회사업가입니다. 참조 : 복지야성 '이웃 관계의 독립'

구슬 노릇이 최선인 사회사업가도 있고 구슬 노릇으로 족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사업가가 직접 구슬 노릇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사업가는 구슬 꿰는 사람입니다.

뒷이야기

1. 사회복지사와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가 다 사회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2. 사회사업가는 사회 공작원입니다.

사회를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곳이게 하는 ‘사회 공작원’입니다. 참조 : 복지소학 ‘친민지도’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 인간적인 사회
우리는 그 정의를 세우고 인간성을 살리는, 사회사업가입니다.

3. 사회사업가의 상징은 ‘발바닥’입니다.

사회사업은 발바닥 닦도록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현장을 다녀야 잘됩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발바닥을 통해서 오고 발바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 사회사업가 정체성의 한계

이런 사람만 사회사업가라거나 사회사업가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직업이라면 같거나 비슷한 속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정체성으로 사회사업가만 그렇다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자리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정체성으로 모든 사회사업가를 아우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정체성을 밝힘은 사회사업가 노릇 사회사업가답게 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하며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다움 사회다움’ 관점에서 보는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 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고, 이런 사회사업이 중시하는 핵심 가치는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이런 사회사업의 이상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이며, 그 철학은 복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흐르게 하고 바탕이 살게 하고 보편적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우려 할 때 특히 중점을 두어 살피게 되는 점은 생태 강점 관계, 곧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다움 사회다움과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서 나오는 방법이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입니다. 이렇게 돕는 사회사업가는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사람, 연계 하고 주게 하는 사람, 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사회사업 방법과 사회사업가 정체성 - 이와 같이 사회사업 요결을 여러 갈래로 이야기했으나 어느 것이든 가리키는 실체는 동일하니 곧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입니다.

시설 사회사업

1. 시설

1) 주거 공간

① 시설은 주택입니다.

지역사회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설 주택도 위치 규모 형태가 다양합니다. 어디에 있든 규모나 형태가 어떠한 단체 생활 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생활 단위는 개별 가구입니다.

② 시설은 사회주택입니다.

사회가 마련하여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든 단체 생활 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느 사회주택과 마찬가지로 생활 단위는 개별 가구입니다.

③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사회주택입니다.

여느 사회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 자격이 있는데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입주합니다.

어떤 도움을 얼마나 받든 저마다 따로 자기 생활을 하는 각 입주자의 집입니다. 사생활에 얼마쯤 제약이 있고 독립성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단체 생활 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생활 단위는 개별 가구입니다.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산다는 점, 그래서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달려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2) 지원 조직

① 시설은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지원 기관’입니다.¹⁾ 참조 : 17쪽 ‘사회사업 개념’, 21쪽 ‘지역사회’

② 시설은 지역사회를 입주자가 살 만하고 입주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
게 하는 기관입니다. 참조 : 32쪽 ‘사회사업 이상’

주거 공간으로서의 사회주택과 지원 조직으로서의 사회사업 기관

시설 정체성이 이릅니다.

이는 ‘시설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입니
다. 시설이 제구실하고 시설 사회사업 제대로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참조 : 복지소학 ‘정명’

1) 복지를 전달하는 전달체계나 대신 이루어 주는 대행업체 기능을 아주 부
정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 해도 그런 노릇을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시설을 ‘지원 기관’이라 하는 뜻이 이릅니다.

지원 조직으로서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사회
주택의 관리 기관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설 관리를 전담하거나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가구 시설은 대개 그 가구의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관리하게 돕습니다.

공유 시설은 입주자 총회나 대표 회의 또는 입주자가 참여하는 시설 관리팀
같은 데서 의논하여 관리합니다.

2. 가구

가구는 ‘독립적 생활 단위’입니다.¹⁾

가구마다 따로 생활합니다.

주거 공간이 시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집 한 채나 방 하나를 단독으로 쓰든 다른 가구와 함께 쓰든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입주자는 대개 낱님이라,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 가구입니다.²⁾

이러므로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생활하게 돕습니다.

한집 한방에 산다고 다른 입주자와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쯤 한계가 있지만 저마다 각각 자기 생활을 하게 돕습니다.³⁾

참조 : 11쪽 ‘자립과 독립’

1) 가구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독신으로서 주거를 가지고 단독 생활을 영위하는 자.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가구를 ‘주거 공간’ 개념으로 쓸 때는 대개 집이나 방을 가리킵니다. 흔히 ‘호’라 합니다.

2) 한집 한방에 산다고 한 가구는 아닙니다.

주방 식당 거실 화장실 따위의 공간이나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이불장 따위의 세간을 함께 쓴다고 한 가구는 아닙니다.

전입할 때 각각 독립 가구로 등록합니다. 주민등록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생활은 독립 가구로 지원합니다.

3) 여의치 않으면 집이나 방별로 생활하게 돕습니다. ‘원내 그룹홈’으로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우선 동이나 층 단위로 적용해 봅니다. ‘원내 소규모 시설’로 분리 운영하는 겁니다.

3. 입주자

입주자는 사람입니다.¹⁾

어찌해야 사람답다 하며 사람답게 돕는다 할 수 있을까요?

사회사업에서 ‘사람다움’은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입니다.

다만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곳이라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확장되고 따라서 사람다움도 그만큼 더 나아갑니다.

참조 : 93쪽 ‘시설에서의 사람다움’

시설 사회사업은 이 ‘사람다움’을 좇아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며 사람답게 ‘살게’ 돕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라도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으로 존중하고 사람답게 돕습니다.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며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돕는다는 말이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사람 구실’ 하게 돕는다는 말입니다.

입주자를 ‘사람’이라 하는 뜻이 이러합니다.

※ 노인 시설 입주자는 어른입니다. 어른답게 돕습니다. 참조 : 복지소학 ‘어른다움’

1) 입주자는 시설과 계약하고 시설 주택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입주자는 계약에 따라 일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계약 조건이 어떠한지 어떤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입주자는 ‘사람’입니다.

1)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게 돕습니다.

①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당사자의 일, 이를테면 청소 세탁 취사 요리, 세면 양치 목욕, 여행 산책 운동, 생일잔치, 교제, 쇼핑 구직 자취, 취미 활동 따위에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가 다 하기 어려우면 과업을 세분하고 단계를 나누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하고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해 줍니다.

대신 해 줄 때는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②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자신의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살아가게, 저마다 나름대로 하는 일이나 즐기는 것이 있게 돕습니다.

더디고 힘들고 어설피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¹⁾

1) 자기 삶을 살아 보기는커녕 자기 삶을 꿈꾸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면? 서비스에 순응 안주하여 편하고 재미있고 안전하게 연명할 뿐이라면?

단체 생활이 일상화한 시설의 입주자에게 자기 삶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고나지 않게 보호 통제하는 시설의 입주자가 자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시설 입주자 인권 침해 그 핵심은 프로그램 따위로 단체 생활 시키며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입주자 개인의 삶을 희생시키는 행위입니다.

2)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①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연락하고 초대하고 방문하고 문안 축하 위로 격려 응원 칭찬 감사 선물하고 도와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놀고 쇼핑하고 공연 영화 보고 여행하고...

이렇게 둘레 사람과 어울리게 돕습니다. 둘레 사람의 일로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입주자의 일로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② 지역 주민 시민으로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돕습니다.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이 다양 풍성해지고 평범해지고 자연스러워지게 합니다.¹⁾

③ 사람 구실 하며 살게 돕습니다.

관계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돕습니다. 자식 노릇, 부모 노릇, 어른 노릇, 친구 노릇, 집주인 노릇, 직원이나 동료 노릇, 회원 노릇 같은 사람 구실 잘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참조 : 118쪽 '구실'

1) 지역사회 복지 수단을 이용하는 데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주선합니다.

운동 산책하러 갈 때, 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갈 때, 시장 백화점 갈 때, 공연 영화 보러 갈 때, 학원 문화센터 도서관 갈 때, 놀러 갈 때, 구경 갈 때, 한잔하러 갈 때, 뭐 먹으러 갈 때, 투표하러 갈 때, 지역행사에 참여할 때, 교회 학교 직장 갈 때, 가는 김에 같이 가고 하는 김에 같이 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둘레 사람이 없으면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이나 전담 실습생을 주선합니다.

4. 주거 지원

주거는 어떤 곳에 머물러 지내는 생활입니다.

주거 지원은 주로 시설 밖 주거를 돕는 일입니다.

당사자의 욕구와 역량, 인간관계와 사회 활동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참조 : 96쪽 ‘주거 지원의 필요성’

- ① 원외 가구 거주 : 시설이 밖에 마련한 주택에 거주합니다.
- ② 외박 : 때때로 시설 아닌 곳에서 하루 이틀이나 며칠 지내다 옵니다. 명분과 기회, 횟수와 기간을 늘려 갑니다.
- ③ 더부살이 : 일정 기간 결연 가정이나 위탁 가정 또는 친지 가정에서 지냅니다.
- ④ 판살림 : 좋은 집주인, 좋은 이웃이 있는 곳에서 자취합니다. 시설이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집주인이나 이웃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돕습니다.
- ⑤ 본가살이 : 본래 살던 집이나 가족의 집에 거주합니다. 시설이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가족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돕습니다.

기타 : 1~2주쯤의 자취나 본가살이를 지원하는 단기 사회사업, 둘레 사람이 시설에 하루 이틀 묵거나 상당 기간 동거하게 돕는 역 주거 지원

시설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입주자는 시설 밖에서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시설로 돌아오거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거를 지원하면 입주자의 삶이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주거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질적으로 아주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5. 봉사자

사회사업은 입주자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일이 없는 사람을 봉사자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참조 : 21쪽 ‘당사자의 지역사회’, 64쪽 각주 2) ‘그 밖의 사람’

다만 봉사자 도움이 필요하거나 봉사하겠다고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이렇게 합니다.

1) 입주자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

이를테면 ‘철수회’를 만드는 겁니다.

철수 씨와 의논하고 함께 회원을 모집합니다. 기존 봉사자 가운데 철수 씨와 잘 맞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김에 함께하고 가는 김에 같이 갈 만한 사람을 위주로 추가 모집합니다.

식사 목욕 산책 운동 쇼핑 요리 등산 여행 외박 신앙 취미 직업 공부 같은 과업별로 또는 요일별로 도움이 필요한 만큼 모집합니다.¹⁾

철수 씨와 함께 ‘철수 씨 지원 안내서’를 회원에게 설명합니다. 회원은 도우면서 발견하는 철수 씨의 강점, 철수 씨에게 잘 맞는 환경 요소, 새로 터득하는 지원 방법 같은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로써 때때로 지원 안내서를 수정 보완해 갑니다.²⁾

1) 신앙 취미 직업을 도우면 자연스럽게 둘레 사람이 생깁니다.

2) 입주자 개인별 맞춤 실습도 좋습니다. 실습생 한두 명이 특정 입주자의 생활 과업을 전담 지원하게 추천하는 겁니다. 참조 : 복지야성 ‘단기 사회사업’
여의치 않으면 우선 집 단위로 적용해 봅니다. 호별 맞춤 지원 조직이나 호별 맞춤 실습을 활용하는 겁니다.

2) 자원봉사자

①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봉사자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려 하는지, 입주자에게 설명하고 당사자의 동의나 신청을 받아 봉사자와 연결합니다.

입주자가 도움 받는 그 일에 제구실 잘하게 돕습니다. 봉사자에게 다 맡겨 버리지 않고 본인이 할 일을 잘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입주자가 집 주인 노릇 잘하게 돕습니다. 봉사자에게 인사 대접 잘하고 의논 부탁 감사 잘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줍니다.

② 봉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입주자를 그 집 주인 그 일 당사자로 존중하여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를 잘하게 합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대신 해 주지 않게 합니다.

필요하면 당사자와 함께 ‘지원 안내서’의 해당 대목을 설명해 줍니다.

서로 잘 맞으면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 회원으로 영입합니다. 봉사자의 집에 가서 식사 다과 놀이 공부 따위를 함께 하거나 자고 오는 일을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¹⁾

1) 자원봉사자 관련 주의 사항

①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위해 입주자를 연결해 줌은 온당치 않습니다. 입주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봉사자를 배치하는 처사는 더욱 그러합니다. 후원까지 하는 기업 단체 봉사자라고 특별히 선대하여 봉사 대상자로 대 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② 봉사자가 단체로 오더라도 입주자를 모이게 하지 않습니다. 봉사자가 입주자 개인이나 모둠, 집이나 방별로 찾아가 활동하게 주선합니다.

공유 시설이나 여러 가구에 관련된 활동이라면 봉사자와 입주자 연석회의를 주선하여 활동 계획을 의논하고 과업을 분담하게 합니다.

참조 : 복지야성 ‘자원봉사자’ 편

6. 프로그램

1) 개별화합니다.

입주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입주자와 사회의 것으로써 이루고 누리게 합니다.

여기 입주자는 특정 입주자 개인이고 지역사회는 대개 그 입주자 개인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조 : 21쪽 '당사자의 지역사회'

집단 활동 프로그램은 하지 않습니다. 참조 : 110쪽 '프로그램'

2) 실제 생활이게 합니다.

체험 활동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게 합니다.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써 배우기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생활 과업으로써, 배우게 합니다. 그 자체로 생활 과업이 해결되게 합니다. 입주자의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되게 합니다.

참조 : 72쪽 '당사자의 삶이게 합니다.' 122쪽 '프로그램 복지와 생활 복지'

3)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으로써 평범하게 합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 수단으로써 하게 돕습니다.

그 사회 그 연령대의 여느 사람처럼 하게 돕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 입주자라고 형식 방법 비용 절차 수준 따위를 별나게 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전용 복지 수단으로써 하거나 여느 사람과 다르게 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참조 : 44쪽 '보편적이게 합니다.' '평범하게 합니다.'

뒷이야기

1. 시설에서의 사람다움

참조 : 8쪽 '사람다움'

1)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게 돕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할 뿐 아니라 또한 '자기 삶'을 산다는 말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원하고 자기 삶을 꿈꾸고 자기 삶을 삽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삶을 산다 함은

저마다 나름대로 자신의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살아간다, 저마다 나름대로 하는 일이나 즐기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복지관은 대개 특정 사업으로 만나는 곳이라, 특정 사업 '그때 그 일에서'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게 도울 뿐입니다. 그 밖의 '자기 삶'을 사는 일까지 간여할 책임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곳이라, 사람답게 도와야 할 '그때 그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입주자가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게 도울 뿐 아니라 또한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2)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 하게 돕습니다.

그런데 어울려 살다 보면 그 관계에 따라 각각 감당해야 할 ‘사람 구실’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대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 취급 잘 안 합니다. ‘사람 구실’ 해야 사람답다는 말입니다.

참조 : 복지영성 ‘복지 원형’

복지관은 대개 특정 사업으로 만나는 곳이라, 특정 사업 ‘그때 그 일에서’ 제구실하게 도울 뿐입니다. 그 밖의 구실까지 간여할 책임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곳이라, 사람답게 도와야 할 ‘그때 그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입주자가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도울 뿐 아니라 또한 ‘사람 구실 하며 살게’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¹⁾

1)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사업가에게 아이의 삶 전반을 챙겨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곳 이 일이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다.'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얼마쯤 선생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그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제구실 잘하고 사람 구실 잘하게 얼마쯤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시설 사회사업의 발전

- 1) 당사자가 자주하는 일, ‘내 일이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 수준이 높아짐이 발전입니다.
- 2) 돌레 사람과의 관계 소통이 풍성해지고 평범해지고 자연스러워짐이 발전입니다.
- 3) 갈수록 더 나은 구실, 덜 예외적이고 더 책임 있고 더 평범한 구실을 더 다양하게 더 많이 더 자주 하게 됨이 발전입니다.

시설 사회사업은 이밖에도 발전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1) 실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일입니다.

발전이 없다면 대우가 좋아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나아진 게 없는데 직급이 오르고 보수를 더 받는다면 오히려 부끄럽고 괴로울 겁니다. 배우고 연구하여 개선 개발하는 재미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참조 : 35쪽 ‘발전’ | 복지야성 ‘소진과 타성’

1) 예를 들어, 먹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먹는 때와 곳, 식탁과 의자와 식기, 팔받침대의 재질 높이 각도, 손가락의 길이 크기, 보조기기를 조금씩 바꾸어 보며 개선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입거나 벗을 수 있게, 품위 있다거나 멋있다고 느끼게, 옷감과 옷 모양을 조금씩 바꿔 봅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정보를 검색하고 문헌을 찾아봅니다. 당사자의 돌레 사람과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조기기 전문가, 의료기 판매상, 의류 디자이너, 옷 수선 전문가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3. 주거 지원의 필요성

1) 관계 지원의 결과

입주자를 사람으로 보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 그 관계를 살리는 데 힘쓰게 됩니다.

관계를 살리면 입주자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고 활동 반경이 넓어져서 주거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¹⁾

그러므로 입주자의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 지원은 입주자를 사람답게 돕는 사회사업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2) 사회사업 철학

시설 입주자의 주거도 여느 사람과 같거나 비슷하게 합니다.

여느 사람은 직장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 살기도 합니다. 얼마간 고향집이나 자식 집에 가서 지내기도 합니다.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오기도 합니다. 연휴 방학 휴가 때 다른 데서 얼마간 지내기도 합니다.

사회사업 철학에 따라 실천한다면, 시설 입주자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참조 : 44쪽 ‘평범하게 합니다.’

1) 주거의 유동성

고정 주거는 사실상 거처를 옮길 수 없는 주거이고, 가변 주거는 필요에 따라 거처를 옮길 수 있는 주거입니다.

주거는 대개 인간관계와 사회 활동에 따라 변합니다.

3)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자유를 누리는 데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입주자가 있습니다. 이런 입주자는 사회사업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하릴없이 그저 시설에 붙박여 살아야 하니 간혀 사는 것이나 다름없을지 모릅니다.

주거를 적극 지원하지 않음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입주자를 구속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4) 원내 가구의 불편한 현실

원내 가구는 많은 입주자가 한곳에 몰려 살기에 정서불안 짜증 탐욕 도벽 소란 산만함 이상행동 다툼 폭력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일반 복지 수단을 이용할 때 지역사회가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 입주자가 동시에 한곳에 몰리지 않게, 때와 곳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내 가구가 불편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외 가구가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인력 운용의 융통성도 떨어져 입주자 지원에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 지원 또는 고난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원내에 남은 직원들의 근무 강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야간 근무 횟수가 증가하여 주간 활동 지원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원내 가구의 공간이나 운영 방식을 개선하면서 다양한 주거 지원을 병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한편으로는 가구를 작게 나누어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원내 그룹 홈 가구를 늘리고 한편으로는 때때로 얼마간 다른 곳에서 지내다 오거나 탄살림하게 돕는 겁니다.

4.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정신·신체 기능이 심하게 손상·결여되었거나 고도 중증의 치매 질환이 있거나 자해 폭력 파손 소란 배회 발작 같은 이른바 도전 행동이 심하면 어찌할까요?

의사소통은 안 되고,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고, 한 명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할 일은 많고, 도와줄 만한 둘레 사람도 없고 사람들은 꺼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거나 오히려 문제가 커지거나 굳어지거나 교묘해지고, 달리 뵈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누가 다루어도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1) 감수합니다.

내일 또 내일 이어질 괴로움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며 갈 데까지 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고뇌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음을 사회사업가에게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감내하는 겁니다.

2) 연구합니다.

문헌을 두루 살피다 보면 시도해 볼 만한 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참조 : (환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케어](#) 기술

문제행동치료의 표준지침 및 치료 [매뉴얼](#), 국립정신건강센터

둘레 사람, 전임자, 경험자, 전문가에게 두루 묻고 의논하다 보면 얼마쯤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얼마쯤 해결 극복 감당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사례가 아니어도 유용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이런 건 어떨까요?

① 판전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당사자도 힘들 겁니다. 사회사업가도 지쳐서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을 겁니다. 당사자도 사회사업가도 탈출하기 충전이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이 괴로운 굴레에서 벗어나 숨 쉬고 즐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판, 판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는 모르는 척하고 짐짓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일,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벌여서 그 힘으로 문제를 희석 상쇄하거나 감당 극복 초월하게 돕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 55쪽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

② 분산

많은 입주자가 몰려 사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매일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면, 사실상 강요된 일과나 시간표에 따라 단체 생활이 일상화한 곳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밀집 주거, 고정 주거, 단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불안 짜증 소란 탐욕 도벽 배회 발작 자해 폭력 다툼 파손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불거지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 단위를 세분하고 주거와 활동을 분산합니다.

첫째, 생활 단위를 세분합니다.

동이나 층마다, 집이나 방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 따로 생활하게 돕습니다.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 따로 생활하게 돕습니다.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째, 주거를 분산하고 활동을 분산합니다.

때때로 다른 곳에서 하루나 이틀 또는 며칠씩 지내다 오면, 입주자 개인의 바깥 사회 활동이 있으면, ‘다른 입주자 몇 명이라도’ 그렇게 다양한 주거와 사회 활동으로 밖에 나가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③ 개인별 지원 조직과 맞춤 실습

이를테면 ‘철수회’를 만들어 식사 목욕 산책 운동 쇼핑 요리 등산 여행
외박 신앙 취미 직업 공부 따위를 돕게 주선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활용합니다. 당사자와 의논하고 실습생을 모집
하여 특정 생활 과업을 집중 지원하게 합니다.

할 수 있겠다 싶은 입주자부터, 할 수 있겠다 싶은 일부터 해 봅니다. 차
츨 더 어려운 입주자, 더 어려운 일까지 감당할 마음과 힘과 여지가 생
길 겁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며 자기 삶을 살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람 구실 하게...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도 이렇게 도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는 한 사람답고 사람 사는 것 같게, 하루라도 그렇게 살
아 보게 돕고 싶습니다.

더디고 힘들지라도, 잘못되어 비난 징계 형벌을 받게 될지라도...

믿음과 희망을 굳게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사회사업 기록

1. 이야기

1)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야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 주는 이야기,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씁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버젓해지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하게 되는 이야기,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야기를 씁니다.

2) ‘사회사업’ 이야기

사회사업가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도왔는지 말해 주는 이야기, 사회사업가의 이야기를 씁니다.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기관의 정책과 형편,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 기회비용 같은 ‘근본과 현실’을 헤아려 연구 실천 성찰하는 이야기, 사회사업가의 생각과 마음이 보이고 그 일의 원리 방법 의미가 드러나는 이야기, ‘사회사업’ 이야기를 씁니다.

이런저런 행사 서비스 프로그램 후원 봉사를 했다고 복지사업 실적이 나 늘어놓는 기록, 수치 중심 기록은 감동도 실익도 없습니다.

사회사업가나 복지기관은 빛나고 대단해 보이지만 당사자나 지역사회는 구차하거나 무능 무책임 무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가의 생각과 그 일의 원리 방법 의미를 밝히지 않으니 다른 사회사업가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2. 책 만들기

1) 기획

특정 분야 기관 부서의 사회사업, 또는 특정 단위 사업이나 세부 과업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기획합니다. 연말이나 몇 년 뒤에 또는 사업 종료 후에 묶어 낼 보고서의 구성을 그려 보는 겁니다.

2) 보고서 워크숍, 가상 출판 기념식

표지를 꾸미고 서문과 목차를 쓰고 문헌 연구나 선행 사례, 시나리오를 얼마쯤 써서 가제본해 옵니다. 동료들에게 보여 주고 정보나 의견을 나누며 다듬습니다.

가상 출판 기념식을 합니다. 실제 그 날인 것처럼 책을 소개하고 출판 소감을 나눕니다. 축하합니다.

3) 내용 채우기

① 관련 문헌을 살피고 관련 교육이나 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꾸준히 보태고 다듬어 갑니다.

② 전임자나 경험자의 이야기, 선행 사례들을 보태고 다듬어 갑니다.

③ 그 가운데 좋은 걸 선택 조합 가공하여 적용하거나 스스로 연구 개발하여 적용합니다. 꾸준히 발전시켜 갑니다.

④ 실천 과정과 성과와 의미를 기록합니다. 꾸준히 다듬어 갑니다.

이와 같이 연구 적용 성찰하며 그 지식 경험 생각을 기록해 갑니다.

4) 인쇄, 출판

자료와 기록을 편집하여 원고를 완성하면 기관과 당사자들의 허락을 받고 인쇄소나 출판사에 보냅니다.

사회사업 평가

1. 개요

1) 평가는 따져 보고 성찰하고 헤아려 보는 행위입니다.

기획이 적합·적절한지 따져 보고, 바르게 잘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성과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2) 사업을 만들 때, 실행하는 동안에, 사업을 마칠 때 평가합니다.

① 사업을 만들 때, 기획이 적합·적절한지 따져 봅니다. 근본과 현실을 헤아려 명분과 실리를 따지는 겁니다.

② 실행하는 동안에, 바르게 잘하고 있는지 성찰합니다. 명분과 실리에 맞게 하고 있는지 정합성을 챙기는 겁니다.

③ 사업을 마치고는, 얻은 명분과 실리를 헤아려 그 성과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 감사합니다.

외부 평가라면 사후에라도 기획이 타당했는지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 평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민망합니다.

내부 평가라면 사업을 만들 때나 실행하는 동안에 명분과 실리를 꼼꼼히 따져서 챙기고, 마치고는 그렇게 챙긴 명분과 실리를 꼼꼼히 찾아내어 자랑 칭찬 축하 감사하고 배움과 희망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2. 정합성 평가

1) 사회사업 근본과 기관 정체성이나 정책에 들어맞는지 평가합니다.
사회사업 실체가 여기에 들어맞아야 사회사업 제대로 한다, 제대로 했다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이야기하는가? ‘복지사업’을 이야기하는가? 어느 쪽을 빛내는가? 이로써 평가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버젓해지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가야 사회사업 잘한다,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 그 이야기에 ‘그래~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게 될 때 사회사업 정말 잘한다, 정말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최고의 평가는 ‘사람 사는 것 같다.’ 바로 이것입니다.

3) 목적 목표 원칙에 충실했는지 평가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밝힌 목적 목표 원칙이 그러해야 하는 근거가 있고 정합성과 실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조 : 복지야성 ‘사회사업 기획’

① 목표 대비 실적 평가?

측정할 수 있게 계량화하라? 목표 수치의 근거를 밝히기 어렵고 달성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쉽지 않아 이현령비현령 꼴 되기 십상입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높으면 잘했다 할까요?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 할까요? 괜히 초과 달성해서 평지풍파 일으킨다 할까요? 얼마쯤이면 잘했다 못했다 괜찮다 할 수 있을까요?

② 사전 사후 비교 평가?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만한 시간 예산 인력 들여서 이 정도밖에 좋아지지 않았느냐 할까요? 얼마쯤이면 잘했다 못했다 괜찮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 덕에 좋아졌다 할 수는 있을까요?

같은 시간 예산 인력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와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 어떤 방식이든 대개 사후에 좋아졌다고 하니,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별 뜻이 없습니다.

인원 횟수 점수 따위의 수치에서는 감동은커녕 의미도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건 민망합니다. 사람을 점수 따위로 재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복지사업 실적 재료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래저래 당사자에게 미안하여 내놓기 어렵겠다 싶기도 합니다.

당사자를 ‘대상화’하는 평가, 사회사업가 일방이 기획 설계 조사 분석하여 내놓는 평가 수치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가 대상 방법 따위를 정하고 조사를 설계 실행하고 데이터를 처리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발표하는 일에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사업 정합성의 증거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 주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야기, 사회사업가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도왔는지 드러나는 사회사업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참조 : 101쪽 ‘사회사업 기록’

3. 실리 평가, 감사 평가

평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억 사례 배움 강점 희망 감사를 나눕니다. 몇 가지만 나누어도 좋습니다.¹⁾

1) 추억

즐거웠던 일, 그리워지는 일, 아름다운 풍경 낭만 정취, 재미있는 일화 사진 동영상을 나눕니다. 이렇게 즐겁고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잘 누렸다고 자랑합니다.

2) 사례

자기 사업에서 잘된 사례를 한두 가지 나눕니다. 그 사업의 계획서, 서식, 기록, 사진이나 영상, 보고서, 참고 문헌, 공부 노트 같은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와서 동료들에게 보여 줍니다.

동료들은 잘 듣고 적극 반응해 줍니다. 보았거나 느낀 것을 보태어 맞장구쳐 줍니다. 그 사례의 의미를 찾아 세워 줍니다. 정합성의 작은 단서라도 민감하게 알아주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발표자를 안아 주며 칭찬 감사합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참~ 귀하다고, 나도 그렇게 해 보고 싶다고...²⁾

1) 먼저 평가회를 설명하고 잘 준비하게 돕습니다. 주제마다 몇 줄 또는 몇 낱말이라도 써 오게 부탁하고 사전에 한두 번 챙겨 봅니다.

인원이 많으면 부서나 업무가 고루 섞이게 몇 명씩 조를 짜서 나눕니다. 어떤 것은 전체 앞에서 다시 나누기도 합니다.

동료가 발표할 때는 비판이나 조언을 삼갑니다. 이전 발표와 비슷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2) 잘못된 점, 부족한 점, 고칠 점을 이야기하면 기운 빠지거나 분위기 나빠지기 십상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만큼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3) 배움

보았거나 들었거나 체험하여 얻은 지식 기술 지혜, 발전 숙련 심화한 지식 기술 지혜, 이런 배움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어 가지씩 나눕니다. 실제로 적용하여 체득한 것, 자기 이야기가 있는 배움을 위주로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4) 강점

잘 발휘되었거나 새로 발견한 자신의 강점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동료와 기관과 복지 당사자들과 지역사회의 강점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면 더욱 좋습니다. 자신을 격려하고 동료를 세워 주고 기관과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품는 겁니다. 그 강점 가능성으로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5) 희망

추억 사례 배움 강점을 살려 희망이나 구상을 이야기합니다. 평가회에서 새롭게 그려지거나 다듬어지는 희망 구상까지 반영하여 이야기합니다. 동료들이 안아 주며 응원 축복합니다.

잘되지 않은 점은 대개 담당자 스스로 압니다. 이미 받은 지적 책망 잔소리 비판이 족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점, 부족한 점, 고칠 점, 이런 걸 꼭 평가회에서 다루어야 할까요?

고쳐 줄 의무나 자격이나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면, 대안이 없거나 새로운 게 없다면,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실익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라면,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평가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업을 마치고 하는 내부 평가회에서는 비판이나 조언을 삼갑니다.

비판이나 조언은 사업을 기획 실행할 때, ‘그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려면 평가회 끝나고 따로 하든가 다음에 기획 실행할 때, ‘그때 해야지’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가회에서는 비판 충동을 꼭 누르고, 자랑하고 공감하고 알아주고 함께 기뻐하며 칭찬 감사로 화답함이 좋습니다.

6) 감사

서로 고마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관심 배려 친절 수고 희생 섬김 도움 나누음을 기억하고 알아주는 겁니다. 꾸민 말이나 이벤트로 하지 않고 그저 진심을 담아 ‘소박하게’ 표현함이 좋습니다. 고마웠던 일 그구체적 이야기로써 표현함이 좋습니다.¹⁾

평가회는 ‘잔치’입니다.

평가회를 이렇게 하면 평안하고 재미있습니다. 눈물 나게 행복합니다. 사랑과 감동이 넘칩니다. 지식이 더하고 지혜가 깊어집니다.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잘하고 싶은 의욕과 희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과 동료와 기관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평가회는 ‘지침’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동안, 다음 6개월이나 1년 동안, 좋은 추억거리와 사례와 배움을 만들어 갑니다. 강점과 희망을 찾는 데 힘씁니다. 동료의 도움에 민감하게 되고 자신도 동료를 도와주려 합니다. 이와 같이 다음 평가회에서 나눌 이야기가 풍성해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²⁾

1) 평가회 끝 순서로는 수필 한 편씩 나눔이 좋습니다. 그간의 일들과 소회를 이야기하는 수필, 어떻게 배우고 누리고 성장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수필 한 편씩 써서 낭독합니다. 몇 명만 낭독해도 좋습니다.

더하여 부서장은 부서 직원에게, 기관장은 간부 직원 또는 전체 직원에게 각각 추억과 감사 응원 축복의 정을 가득 담아 이야기 편지를 씁니다. 관련 사진도 몇 장 넣으면 좋습니다. 읽어 주고 꼬옥 안아 줍니다.

2) 집단 활동이나 행사 같은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평가도 실시 평가, 감사 평가! 이렇게 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하는 평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교육을 평가하기보다 배움과 적용(성찰과 구상)을 정리하고 나누게 함이 좋습니다. 교육이나 강사를 평가해 달라는 설문은 응답자에게 폐가 될 뿐입니다.

시설 야성

1. 주거의 자유

1) 약속이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이나 방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시설 입주자의 집이나 방은 그래도 괜찮을까요? 입주자가 그런 꼴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약자라면…

여느 사람에게도 못하지만 이런 약자에게는 더욱 못할 짓입니다.

그 집이나 방의 담당 직원이 아니라면 다른 직원은 물론이고 시설장도 삼갈 일입니다. 다른 집 다른 방 입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직원이 안내해도 그곳 입주자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허락하더라도 삼갈 일입니다. 외출했다면, 아무도 없으니 둘러보아도 괜찮을까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는 일이라니…

몰려다니며 구경하듯 살피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리저리 둘러보지 말며 기물을 함부로 만져 보지 말라 했습니다. 방 문틈이나 창문으로 들여다보아셔도 안 됩니다. 남의 집 담이나 벽이 비록 허술해도 엿보지 말라 했습니다.

3) 형법 제319조는 거주자의 승낙 없이 혹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가는 죄를 주거침입으로,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이같이 하는 죄를 특수주거침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프로그램과 후원 봉사

1) 집단 활동 프로그램

① 시설 생활은 곧 단체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입주자를 단체로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시설 입주자는 단체 생활 시켜도 된다는 듯, 단체로 관리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듯, 단체 생활이 이상할 게 없다는 듯...

수시로 집단 활동을 벌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미명하에 집단 활동을 아예 대놓고 일상화하기도 합니다. 집합 동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② 수시로 또는 일상적으로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하면 입주자가 자기 일상을 프로그램에 맞추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유도 규정 통제되는 건 아닐까요?

입주자 개개인이 저마다 자기 삶을 살아갈까요? 자기 삶을 꿈꾸거나 원하기는 할까요?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하는데 생활지도원이 입주자의 삶을 개별 지원하려 할까요? 여력이 있을까요?

③ 프로그램이라 하니 그럴싸하지만 실은 단체 생활을 호도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자기 삶을 생각해 보지도 못하거나 체념하고, 순응 안주하게 되는 건 아닌지, 길들여지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④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 좋은 점도 있고 원하는 사람도 있으나 더러는, 누군가에게는, 집합 동원이나 다름없을지 모릅니다.

유익하더라도 자주 할 일은 아닙니다. 입주자들의 자발적 집단 활동이라도 조심스럽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주도하는 집단 활동은 더욱 그러합니다.

⑤ 으레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줄 알거나 프로그램 잘하는 게 사회사업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프로그램 실적 부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삶’을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사자의 삶’을 살게 돕는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삶을 세우려는 의지나 열정이 없어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⑥ 입주자 본인의 삶 ‘당사자의 삶’을 세우자는 뜻을 알고 당사자의 삶을 세우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그래도 집단 활동 프로그램 하고 싶을까요?

당사자가 자기 삶을 사는 모습에 감동한 적이 있다면, 그렇게 돕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았다면, 그래도 집단 활동 프로그램 하고 싶을까요?

⑦ 어떤 곳은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라도 하지 않으면 마냥 방임되는 입주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둘레 사람이 없고 개인별 지원 조직도 없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다만 집단 활동 프로그램은 입주자 개별 지원 노력을 저해할 수 있으니 삼가고 또 삼갑니다. 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2) 후원 봉사

① 후원 봉사는 입주자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구차한 인상 낙인을 만들거나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합니다.

시설 홈페이지와 소식지는 물론이고 직원 명함에까지 후원해 달라는 글과 계좌번호들이 있고 인터넷에 시설 봉사 다녀온 이야기나 후원 상품 전달하는 사진과 기사들이 널려 있다면 그 시설과 입주자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될까요?

입주자가 그런 글을 보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그런 시설에 살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② 후원 봉사 많이 받는 입주자는 인간관계나 구실이 후원 봉사 받는 관계나 구실로 위축 제한되기 쉽습니다.

③ 후원 봉사 많이 한다면 그 지역사회 사람살이 속에 입주자나 입주자 같은 약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제 마당 제 삶터 바깥, 시설에 떼어 놓고 가끔 후원 봉사나 하면 되는 줄로 알 겁니다.

후원 봉사라고 다 이런 건 아니지만, 후원 봉사 나름이지만... 사회사업가로서는 꺼림칙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참조 : 복지야성 '넘비형 자원봉사', '지원신청'

후원 봉사,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받는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받습니다.

특히 입주자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후원 봉사하겠다고 하면, 먼저 입주자와 의논합니다. 후원 봉사로부터 인격 자존심 염치 품위를 지키게 합니다.

후원 봉사 필요하면 입주자가 찾아 활용하게 합니다. 입주자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합니다. 그마저 여의치 않아서 대신 해 준다면 입주자와 의논하여 심부름하는 모양새에게 합니다.

※ 우민화하는 복지기계

자주성은 숫돌 닳듯 스러지고 의존성은 봄 동산 풀 자라듯 점증합니다.

자존심 얽치 체면 팽개치고 굽실거리거나 애 같은 노릇 하거나 받는 데 길들거나 호의를 악용하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듭니다.

우민화하는 겁니다. 복지기계가 사람을 우민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혼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흐리니 그 폐해가 어찌 작다 하겠습니까?

사람다움을 생각지 않고 돕는다면 어찌 우민복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민화하면 삶을 거두어 연명시켜도 고맙다 합니다.

복지기계 앞에 자기 삶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설프고 더디고 힘들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그래도 당사자의 삶이게 하면 좋을 텐데, 능숙하고 빠르고 쉽고 풍족하고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복지기계로 그저 연명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¹⁾

참조 : 138쪽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삶이게’ | 복지야성 ‘복지기계’

1) “어르신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겠으나, 자칫 인격적 사회적 죽음을 재촉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격적 사회적 생명은 끝났다.’는 사망 선고 또는 ‘이제 인공 복지로 대신하겠다.’는 연명 서비스 개시 선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당신이 주인 되어 누리는 당신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가족 친척 친구 선후배 동료 교우 이웃, 그렇게 평생 어울려 살아온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도 멀어집니다. 기껏해야 사회사업가 요양보호사 봉사자입니다. 그 대상자로서 애 같은 노릇 환자 노릇이나 하기 십상입니다. 사실상 인격적 사회적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3. 시설 용어

- 1) 입소, 퇴소 → 입주, 전입, 전출, 퇴거, 이사 오다, 이사 가다.
- 2) 이용자, 생활인 → 거주자, 거주인 → 입주자
- 3) 원 가정, 보호자, 원 가족 → 본가, 친정,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 사위 며느리 조부모 손자… 부를 때는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남편 분, 부인, 형님, 언니, 동생, 아드님, 따님, 사위, 며느님으로 부릅니다. 당사자가 성인인데 누군가를 ‘보호자’라 함은 꺼림칙합니다.
- 4) 집에 다녀와? → 부모님 댁, 고향집, 본가, 친정에 다녀옵니다. 하숙 집이나 자취방처럼 여기는 입주자는, 특히 미성년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성인이라면 대개 지금 사는 이곳이 자기 집일 테니 다른 곳은 이와 같이 수식어를 붙여 부름이 좋겠습니다.
- 5) 봉사하러 와? 면회하러 와? → 아들네 집, 딸네 집, 부모님 댁, 친구네 집, 교우가정, 동료나 회원의 집, 아는 집, 이웃집에 놀러 옵니다. 밥 먹으러, 차 마시러, 뭐 갖다 주거나 빌리러, 도와주러, 같이 공부하러, 이야기하러, 얼굴 보러, 문안 축하 위로 심방하러 옵니다. 그냥 옵니다.
- 6) 공동체니 한 식구니 하는 말도 불편합니다. 시설을 통째로 우리 집이라 하거나 입주자를 집단으로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로 부름이 꺼림칙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뜻을 모르지 않고 공동체 생활의 가치도 이해하지만 민망합니다.
- 7) 시설 이름 : OO원, OO집, 사랑 평안 나눔 은혜 은총 평화… 시설 터 납니다. OO마을 OO동네… 약자 집단 거주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OO센터는 주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 이름처럼 평범하면 좋겠습니다. 공식 이름을 바꾸기 어려우면 공문서용 이름과 생활용 이름을 달리함이 어떨까요? 주택 이름과 기관 이름을 달리함도 좋겠습니다. 개명한다면 입주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기존 명칭으로 쌓아 온 자산 가치도 고려합니다.

4. 거주시설, 거주자

‘거주시설’이라 하니 주거 지원은 그 시설에 한정될 것 같습니다.
‘거주자’라 하니 그 시설에 거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입할 때부터 퇴거할 때까지 거의 그 시설에서 지냅니다.
명절에 고향집 다녀오거나 집단 활동으로 외박하는 일 외에 다른 곳에서 지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거주시설이라 하고 거주자라 하니 이렇게 불박여 살아도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입주자의 주거를 시설 밖까지 넓혀 다양하게 지원하려는 생각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거주시설, 거주자라는 용어를 꺼립니다.¹⁾²⁾

1) 이런 이유에서 꺼릴 뿐입니다. 쓸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설의 주거 시설은 ‘거주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거주자’라 합니다. ‘시설 거주자는 지역사회에서 사는 게 아닌가?’에서처럼 ‘거주’에 초점이 있을 때는 거주자라 하는 겁니다.

2) ‘시설’의 종류를 나눌 때 복지부 청사는 ‘업무 시설’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는 복지부를 ‘업무 시설’이라 하지 않습니다.

‘시설’의 종류를 나눌 때 시설의 어떤 시설은 ‘주거 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설은 시설과 조직을 아우르는 용어이고 시설의 시설에는 주거 시설 뿐 아니라 업무 시설 따위의 지원 시설도 있으니 시설을 그냥 거주시설이라 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참조 : 복지야성 ‘복지관 정체성’

입주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시설은 자체 보유 주거 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주거 시설을 활용합니다. 시설 자체 보유 주거 시설, 이를테면 원내 주택은 입주자의 다양한 거처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입주자가 그 주거 시설에 거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5. 보호 대상자?

1) 시설 입주자는 다 보호 대상자인가? 어떤 입주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호가 얼마쯤 필요할 뿐인데 시설 입주자를 다 보호 대상자 취급 함은 온당치 않습니다.¹⁾

2) 보호가 필요한 사람 상황 사안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보호를 삼가지 않고, 입주자 자체가 보호 대상인 양 규정하거나 온갖 일에 보호하려 드는 잘못…

입주자의 삶에, 입주자 인권 실현에, 입주자에 대한 인식에, 시설 사회 사업에, 이보다 나쁜 게 있을까요?²⁾

3)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운영계획서, 취업규칙과 근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보호가 필요한 상황·사안을 명기하고 그 ‘특정 상황·사안’에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특정해야 합니다. 참조 : 135쪽 ‘시설의 인권 보장 조치’

1) 사회사업에서 약자라 함은 상황적 약자 곧 약한 상황 ‘그때 그 일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설 입주자는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일에 항상 같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 그때 그 일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상황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그런 것처럼, 항상 약자나 종합 대상자 인 것처럼, 온갖 일에 도와주려 하거나 지도 교육 ‘보호’ 통제 관리하려 들어 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성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①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시설 임직원, 공무원으로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해 보호 운운하거나 시설 입주자에 대해 상황·사안을 특정하지 않고 보호 운운하는 자는 1주 이내의 치료감호나 10시간 이내의 수감명령에 처한다. ㉞

※ 주간보호센터

1) 대상자를 보호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당사자의 삶이 ‘보호’라는 말에 묻혀 버립니다. 개개인의 삶과 사람살이를 지원하기보다 집단 프로그램 따위로 단체 생활 시키며 사고 나지 않게 보호 통제하려 들기 쉬울 듯합니다.

2) 보호하는 사람이 높고 대상자는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보호센터는 보호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말이니 보호 대상자가 주도적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3) 성인이나 노인을 보호한다 하면 민망합니다. 애 취급하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4) 보호 대상자라 하니 문제 있거나 불쌍한 사람 따위로 보기 쉽습니다. 보호 센터라 하니 그곳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상이 구차해집니다.

5) 당사자가 주인이고 어른임을 말해 주는 이름이면 좋겠습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가리키는 이름이면 좋겠습니다.

참조 : 4쪽 사회사업 연구방법 ‘시선’

센터 사회사업가는 당사자 개개인의 주간 생활을 지원합니다. ‘저마다 각각’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여 이런저런 주간 활동을 하며 자기 삶을 살게 돕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실질에 어울리는 이름이라면 주간 생활 지원 센터나 주간 활동 지원 센터, 약칭 주간센터, 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구실

1) 사람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제구실, ‘주인 노릇’ 해야 합니다.
사람은 둘레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사람 구실’ 해야 합니다.

참조 : 93쪽 ‘시설 입주자의 사람다움’

2)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인정 받고 싶어 하는 자존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 본능에 가까운 기본 욕구입니다. 이는 대개 쓸모 있는 구실을 할 때 충족됩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라도 쓸모 있는 구실을 하려 합니다.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한몫하거나 남을 도와줄 때 기쁨과 자긍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당합니다.

대상화하여 받기만 하는 사람, 구실을 잃은 빼앗긴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는 당당함이나 생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3) 인권 침해니 노동력 착취니 직무 유기니 하며 사회사업가로 하여금 입주자의 구실을 빼앗고 다 해 주게, 입주자가 하기 원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게,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입주자의 가족이나 감독관청이 요구한다고 그저 따를 일이 아닙니다. 구실을 살려 도우려는 뜻을 잘 설명하고 그렇게 돕는 일의 실체가 어떠한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4) 시설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제구실 잘하게 돕습니다. 시설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람 구실 잘하게 돕습니다.

7. 복장 인상 구실

1) 복장이나 외모는 개인 자유라 할 수 있으나 시설에서는 마냥 그렇다 하기 어렵습니다. 입주자 본인의 자아상과 행동,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잘 차려입고 잘 단장하면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품위 있게 행동합니다. 직원도 입주자를 귀하게 생각하고 언행을 삼갑니다. 외인도 입주자를 귀하게 보고 품위 있게 대합니다.

2) 직원의 복장 품행 언어도 중요합니다. 입주자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입주자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정하게 입은 직원이 입주자에게 품위 있게 말하면 입주자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외인도 입주자를 대할 때 옷·몸·말 매무새를 가다듬게 됩니다.

3) 이와 같이 입주자와 직원의 복장이나 품행이 입주자의 자아상과 행동, 외인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입주자가 하는 구실, 입주자에게 기대하는 구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설 입주자의 낮은 인상을 보정하기 위해서라도 입주자와 직원의 복장과 외모를 여느 사람보다 더 좋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구실의 격이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평범하게 하자’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평범하지 않게, 더 좋게’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¹⁾

참조 : 44쪽 ‘평범하게 합니다.’ 66쪽 ‘약자일수록 더욱’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체와 복지시설

생태 공동체, 신앙 공동체, 자급자족 공동체, 행복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공동체에 좋은 점이 있고 공동체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끌릴 만합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공동체는 조심스럽습니다. 향 소 부곡 같은 낙인을 초래하거나 굳히거나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공조직으로서 정부 예산을 받는 복지시설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각자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활동지원서비스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모를까...

공동체 생활은 사적 행위에 가깝고 사회사업은 공적 업무에 가깝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그 공동체를 위해 하는 일을 사회사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사적 행위에 정부 보조금으로 임금을 줄 수 있을까요?

사조직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공동체의 가치를 살리더라도 공조직에 합당하게 운영함이 좋겠습니다. 애당초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 사람을 떼어 놓는 복지기계

노인이 사라져 갑니다.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복지시설로 갑니다. 남은 노인들은 복지 서비스 찾아 몰려다닙니다. 자존심 염치 체면 품위 따위는 팽개치고 앞 다투어 달음질합니다.

동네에서 노인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이느니 오갈 데 없는 노인, 병원 요양원에 못 가고 복지관에도 갈 수 없는 노인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노인을 데려갑니다. 가정과 동네에서 구실이 줄어들거나 입지가 좁아진다고 아예 허물을 버리고 노인들의 별천지를 만듭니다. 가족이나 동네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기회를 앗아 갑니다. 어른 노릇은커녕 당신 삶의 주인 노릇 하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노인은 노인끼리! 이렇게 노인 복지 별천지를 만드는 게 불편합니다. 노인을 떼어 놓는, 노인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복지판 고려장이라 할지 모를, 이런 일에 사회사업가가 가세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노인뿐 아닙니다. OO복지원, OO촌, 영구OOOOO... 마치 뭐 분류 수거하듯 약자를 분류 수용하는, 마치 뭐 쓸어 담듯 약자를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복지판 인종 청소라 할지 모를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회와 분리되어 복지기계로 생존 연명하는 약자가 있습니다.

약자 복지 별천지, 약자 집단 거주지, 어떤 곳은 유배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곳의 사회사업가라면 ‘해배’를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리적 해산은 몰라도 사회적 해배는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릇 사회사업가라면 약자를 분류 분리하는 일에 삼가 나서지 말고 방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불가촉천민 흉악범 전염병자 다루듯 약자를 떼어 놓으려는 체제에 하수인 노릇 하거나 가세해서는 안 됩니다.

참조 : 복지야성 ‘복지기계’

9. 프로그램 복지와 생활 복지

생활보다 프로그램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노인 시설 사회사업가.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쫓기는 모양새입니다. 사회사업가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원 개발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보고서 쓰느라 바빠 보입니다.

노인은 프로그램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더러는 전문적이라는 프로그램일수록 평범한 생활에서 멀고 자주성에서 먼 것 같습니다.

살아오신 환경과 사뭇 다른 곳에서 첨단 기구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드리는 연명시켜 드리는 생활은 너무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생존 연명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찍이 산림과 강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동물원에서 보호받으며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사육되는 동물 같다 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당사자가 살아오신 환경, 당사자의 물건, 가족 친지 이웃 같은 당사자의 인간관계, 당사자의 삶을 살려 그렇게 모시고 받들고 거들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당신 생활에 가깝게, 여느 노인의 생활에 가깝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당신 택에 사실 때와 너무 다르지 않게 부득이 다른 점이 있더라도 여전히 당신이 주체가 되어 누리는 당신 삶이 되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프로그램보다 ‘당사자의 삶’이 더욱 귀합니다.

프로그램 복지에서 생활 복지로 !

요양시설 사회사업을 이렇게 바꿀 수 없을까요?

전문 : 정보원카페 공동게시판 [2279](#)번 글 2006.10.23

“의사나 간호사는 급성기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케어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안정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요법사는 마비된 손발을 치료하는 방법, 굳은 관절을 펴는 방법은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비되어 굳은 관절로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케어 담당자들은 기존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 중략 -

케어 현장은 ‘환자’라는 수동적인 치료 대상 대신에 ‘생활의 주체’라는 새로운 인간상이 형성되는 곳이다. - 중략 -

의사와 간호사는 주체가 되고 환자는 수동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 - 생명과 관련될 때는 그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이 아니라 노화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케어는 다르다. 환자에서 생활인으로, 의료케어에서 생활케어로! 노화나 장애를 현실로 받아들여서 각자의 상태에 맞게 ‘생활’하게 하자.”

「새로운 케어 기술」 오타 히토시와 미요시 하루키, 김영주 옮김, 그린홈, 2005년

구구절절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로 보고 치료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안정시키려 들기보다, 사람으로 보고 ‘생활’하게 했다는 말입니다.¹⁾

1) 「노인복지혁명」에서 일본과 유럽의 케어가 이렇게 달라 보였습니다.

일본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시켜 드렸습니다. 복지사업 대상으로 연명시킨 겁니다.

유럽은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우리가 거들어 드릴 테니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이렇게 ‘생활’하시게 도왔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시게 한 겁니다.

이 글을 사회사업에 그대로 옮겨 읽어도 좋겠습니다.

전문가라 하는 어떤 사람들은 복지사업으로 치료 교육하거나 안전하게 보호하려 합니다.

사회사업가는 당사자가 ‘자기 삶으로 생활’하게 도우려 합니다.

사회사업 현장은 후원 봉사 대상자, 보호 대상자, 교육 훈련 대상자, 치료 대상자, 생활지도 대상자, 관리 대상자... 대상자를 늘려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 자기 복지의 주체, 사람살이의 주체로 세워 가는 곳입니다.

보호 대상자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 프로그램 복지에서 생활 복지로, 당사자의 상태에 맞게 ‘생활’하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10. 기저귀

기저귀 차는 분의 자존심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기저귀를 차는 편이 좋은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드릴 수 있을 겁니다.¹⁾

그래도 되도록 기저귀를 쓰지 않고도 용변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너싱홈에 입소한 장애 노인이나 치매 노인은 당연히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그런데 초보 케어 담당자들은 차츰 기저귀를 벗기고 침상에서 탈출시켰다. 기저귀 떼기는 안정을 강요하는 케어를 대신한 새로운 케어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진 케어 방법을 모아서 만든 것이 1988년의 기저귀 떼기 학회이다.”

『환자가 주인 되는 새로운 케어 기술』 오타 히토시와 미요시 하루키, 그린홈, 2005년

우리 어르신들은 기저귀를 채울 수밖에 없는 중증 노인들이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책 저자가 기저귀 떼기를 시도한 곳은 경중

1) 밤에 화장실 다니시는 시어머니가 넘어져 다칠까 봐 잠을 잘 못 자던 며느리. “어머니, 밤에만 기저귀 차실래요?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저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저귀는 수면제예요.”

‘우선은 내가 차고 있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시어머니도 똑같이 기저귀를 차게 해 드렸다. 피부에 닿는 촉감과 배뇨 뒤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기저귀를 차고 주무시게 됐다. 덕분에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니께 기저귀의 효과를 여쭙 보았다. 시어머니는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신경 쓰지 않고 푹 주무신 것 같았다. 나도 푹 잤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기뻐하셨다.’

『노인수발에는 교과서가 없다』90~92쪽, 하나리 사치코 지음, 최태자·심명숙 옮김, 2010년 도서출판 창해

노인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치매·중풍 전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쯤 될 것 같습니다. 그곳 ‘치매 노인이나 장애 노인’은 당연히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저귀를 뗄 수 있었던 건 노인의 자존감을 지켜 주려는 정신이었다고 봅니다. 결코 우리 시설 노인들보다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인복지혁명」 저자는 유럽 노인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몸져누운 노인이 없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85년에 아사히신문 논설에 “일찍이 고령사회에 들어선 국가에는 ‘몸져누운 노인’이라는 낱말이 없다. 일본에서는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들도 그곳에선 휠체어에 타거나 보행기를 이용해 걷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일본 노인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 뭔가 잘못 알고 있든지 어떤 조작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쪽 사람들이 좋은 것만 보여주었든지 아니면 보는 사람이 구석구석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치매·중풍 전문요양시설 노인들은 치매·중풍 증상이 중하여 기저귀를 채우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같이 말할 것 같습니다. 기저귀 떼기 학회 회원들이 돌본 노인들은 경증이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원문 : 정보원카페 공통게시판 [2279](#)번 글 2006.10.23

노인복지 분야 사회사업가 추천 도서

- ① 노인복지혁명, 오쿠마 유키코,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②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들, 선빌리지, 시니어커뮤니케이션 2006
- ③ 뽕꽃, 전희식, 그물코 2008
- ④ 환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케어 기술, 오타 히토시, 그린홈 2005
장기요양 케어자를 위한 케어기술, 학지사 / 케어는 기술이다, 들샘 ...
- ⑤ 케어 실천을 지탱해 주는 원리와 방식 KOMI 이론과 KOMI 차트 시스템
- ⑥ 노인수발에는 교과서가 없다, 하나리 사치코, 2010년 도서출판 창해

11. 근무제

입주자 개별 지원이 가능한 근무제, 사회사업가의 건강과 가정에 관측은 근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모색합니다.

- 1) 모든 ‘생활지도원’을 가구에 배치합니다.¹⁾
- 2) 입주자를 몇 명씩 분담하여 책임 지원합니다.²⁾
- 3) 야간 근무는 1인당 주 1회 이내로 합니다.³⁾⁴⁾
- 4) 입주자의 생활 흐름 곧 요일별 시간대별 지원 수요에 맞추어 생활지도원을 배치합니다.

참조 : <http://welfare.or.kr> [근무표](#) 프로그램

1) ‘생활지도원’ 인력을 다른 일에 돌려쓰는 행태는 말 그대로 ‘인력 유용’일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몫을 얼마쯤 가로채는 일인지 모릅니다.

2) 예컨대 선임자부터 상위 70~80%가 전체 입주자를 분담합니다. 중증장애인 30인 시설이라면 상위 10명이 입주자를 3명씩 맡고 하위 3명은 상위 10명을 보조 또는 대체하는 겁니다.

입주자를 책임 지원하는 생활지도원은, 근무일에 그 입주자의 삶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다른 입주자에게는 그 생활지도원이 부탁한 최소한의 지원만 합니다. 비번일의 일은 근무일에 미리 준비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당번 직원에게 부탁해 놓습니다.

3) 입주자를 책임 지원하지 않는 생활지도원은, 책임 지원하는 생활지도원의 휴가나 출장 시 대직하므로 숙직은 주 1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휴가나 출장이 몰려서 대직으로 감당키 어려울 때는 적당히 변동합니다.

4) 안 되는 사정은 차치하고 되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비가구직이 도와줄 수 없을까요? 주택 구조 변경 또는 카메라 활용으로 야간 근무자를 줄일 수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과 지원, 완벽히 할 수 없습니다. 기회비용을 헤아려야 합니다. 참조 : 복지야성 ‘조건부 사고와 방법적 사고’

※ 유연한 근로시간제

입주자 지원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① 일반 사업장은 대개 매주 매일 근무시간이 일정하고 그 일정한 근무시간에 맞추어 일을 보지만 복지시설은 아주 다릅니다.

입주자의 생활이라는 게, 여느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바쁜 주나 날이 있고 한가한 주나 날도 있습니다. 당직자 외에 누군가 더 일찍 와서 챙기거나 더 늦게까지 지원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 날 동행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② 일정한 시각에 출퇴근하는 일반 근로시간제라면 입주자가 자기 생활을 직원 근무시간에 맞추어 조정 조절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나 사회활동, 취미나 여가 활동 따위를 직원에게 맞추거나 포기하는 일이 유연한 근로시간제보다 많을 겁니다. 요일별 시간대별 지원 수요와 무관하게 일정한 근무 유형을 적용하거나 직원 편의에 따라 근무를 편성한다면 더 그럴 겁니다.

③ 얼마쯤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입주자 지원 수요에 맞추어 각주 각일의 근로시간과 각일의 출퇴근시각을 선택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¹⁾

참조 : <http://welfare.or.kr> [근무제](#) 연구자료

1) 일반 근로시간제에서도 연장근로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늦게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출근 시각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일찍 와서 지원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일찍 퇴근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수요가 많은 주나 날에 연장근로를 많이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지원 수요가 적은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12. 조직과 행정

1) 가구 사회사업가

가구는 저마다 따로 자기 생활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의 ‘독립적 주거 공간’ 또는 ‘독립적 생활 단위’입니다. 가구 담당 직책을 가구 사회사업가 또는 가구직이라 합니다.¹⁾²⁾

2) 고정 직책과 가변 과업팀

법정 직책에는 인력을 고정 배치하고 그 밖의 일 드문드문한 일은 과업팀으로 대응합니다.

과업팀은 직책 직급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만들고 필요할 때만 활동합니다. 팀장은 직급에 상관없이 알맞은 사람이 맡고 팀 활동을 조정하는 노릇을 더할 뿐 결재 같은 상사 노릇은 하지 않습니다.

국장은 경력 직원들이 돌아가며 임기제로 봉사합니다.

1) 특정 입주자를 책임 지원하는 가구 사회사업가는 사례관리자에 가깝습니다.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특정 집이나 방을 책임 지원하는 가구 사회사업가는 시설장에 가깝습니다. OO빌라 2동 302호를 독립 시설인 그룹홈처럼 운영합니다. 모 시설의 정책에 따른 제약이 있고 다른 가구와 공간 세간 생활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제약도 있지만 그래도 따로 재량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2) 입주자 생활 지원 주 담당은 가구 사회사업가입니다. 다만 비가구직도 저마다 그 고유 업무로써 입주자 생활을 지원합니다.

더하여 가끔 가구 사회사업가의 야간 근무를 대신 해 주거나 보조해 주다 보면 입주자를 더 잘 알게 되고 자기 직무를 입주자에게 더 잘 맞추게 됩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보람도 더합니다.

가구 사회사업가는 주간 근무가 그만큼 늘어나고 따라서 입주자 개개인의 주간 활동을 그만큼 더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결재와 공식 슈퍼비전

① 가구 사회사업

큰 시설이라면 몰라도, 작은 시설은 가구 사회사업 결재와 공식 슈퍼비전을 한 단계로만 합니다.¹⁾ 가구 사회사업가 위에 중간 관리자를 두지 않는 겁니다.²⁾

② 과업팀 업무

팀원들과 팀장이 의논하여 한 사람만 기안하고 국장 한 사람만 결재합니다. 필요하다면 국장이 시설장과 의논하더라도, 시설장 재가가 필요한 일이라도, 어쨌든 결재는 한 사람만 합니다.³⁾

1) 작은 시설에서는 사회사업 실세 곧 실질적 슈퍼바이저가 대개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다단계로 하면 다른 결재자의 슈퍼비전은 형식적이기 쉬울 겁니다. 공연히 인력 시간을 유용 낭비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슈퍼비전이 서로 달라 갈등 혼선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시설에서는 공식 슈퍼바이저 곧 결재자를 ‘단일화’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른 직원은 동료로서 비공식 슈퍼비전을 나눕니다. 결재 계통이 아니어도 여러 경로로 다양한 형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관련 사고에 대한 판례 가운데 생활지도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까지 줄줄이 처벌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가구 사회사업에 관한 결재와 공식 슈퍼비전을 한 단계로 함이 좋겠습니다.

2) 중간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면 선임 생활지도원 같은 가구직이 맡되 가구 담당과 당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가구직 외의 직원이 중간 관리자이면? 중간 관리자가 상사 노릇 하거나 가구 담당과 당직에서 빠지면?

입주자 수나 직원 역량 같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간 관리자가 결재 같은 상사 노릇은 하지 않고 최소한의 관리 행정 사무만 더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담당 입주자 지원에 집중하고 다른 사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3) 국장은 여러 과업팀과 협력하여 행정 사무를 총괄합니다. 다만 국장과 과장급 비가구직이 가구 사회사업을 결재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역력이 생겨 따로 과업팀을 꾸릴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인권

1. 개념

인권은 사람다운 권리입니다.

사람다운 속성을 대입하면

인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권리,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입니다.¹⁾

참조 : 8쪽 ‘사람다운’

인권은 ‘~하는 데 사람다운 권리, 사람답게 ~할 권리’로 적용합니다.

사회사업에서는

‘복지를 이루는 데 사람다운 권리, 사람답게 복지를 이룰 권리’로 적용합니다.

그 실제 곧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사+명사’ 형태의 수식 합성어를 이렇게 풀이하곤 합니다. 앞 명사에 접미사를 붙여 뒤 명사를 수식하고 수식어의 뜻을 풀어 구체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사업은 ‘사회’에 접미사 ‘적’을 붙여 ‘사업’을 수식하고, 수식어 ‘사회적’의 뜻을 풀어 ‘사회 속에서 복지를 이루는 사업,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사업’ 따위로 구체화합니다.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권리’로 축자역한 후 ‘사람’에 접미사를 붙여 ‘사람다운 권리’로 풀고 ‘사람다운’의 속성을 대입하여 구체화하는 겁니다.

인권을 사회사업에 적용하려면 이와 같이 개념을 구체화하여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2. 사회사업 인권

1) 일반 사회사업에서 인권은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사람다운 권리입니다. 참조 : 29쪽 ‘자주성의 한계’

그 실체는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될 권리, 둘레 사람과 함께할 권리’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습니다.

2)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곳이라,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확장되고 따라서 인권도 그만큼 더 나아갑니다.

그 실체는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할 뿐 아니라 저마다 자기 삶을 살 권리, 복지를 이루는 데 둘레 사람과 함께할 뿐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시민으로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입니다.

이러므로 시설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습니다. 더하여

①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자신의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살아가게, 저마다 나름대로 하는 일이나 즐기는 것이 있게 돕는 겁니다.

② 입주자가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고 나아가 지역 주민 시민으로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참조 : 86쪽 ‘입주자’, 93쪽 ‘시설 입주자의 사람다움’

3. 법적 인권

법으로 보장하려는 인권도 그 실체가 이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 소통권’ 따위가 그러합니다.

1)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③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자기 결정 및 선택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 자유롭게 이동·거주할 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지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둘레 사람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할 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하여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시설의 인권 보장 조치

1) 인권 실현 장애 요인

① 보호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한다 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니다.

이런 무한정한 보호 의무가, 이로 인한 보호 행위가, 입주자의 사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같은 법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합니다.

참조 : <http://welfare.or.kr> 입주자의 인권과 [보호](#) 의무

② 사고 걱정

사회사업 인권이든 법적 인권이든, 시설 입주자의 인권 실현을 위한 노력은 대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사고 뒷일이 사람을 힘들게 지치게 질리게 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됩니다. 이런 시설의 입주자는 사람다운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하릴없이 그저 ‘연명’이나 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그 핵심은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을 희생시키는 행위입니다.

2) 인권 실현을 위한 조치

① 시설 홈페이지와 홍보물,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서에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당사자가 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고,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게 돕는다고 기술합니다. ‘보호’ 조치는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하기 쉬우니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최소한으로 한다고 기술합니다.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최대한 명시하여 금지하고 또 ‘기타 필요 이상의 보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합니다.

③ 입주 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이 자칫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합의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¹⁾

1) 이렇게 명시해야 이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 곧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 뒷일 걱정을 덜고 입주자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5. 인권 실태 조사

약속도 없이 쳐들어와서 다짜고짜 오라 가라 하다니... 개도 아무한테나 가지는 않는데... 개만도 못한 꼴 당하니 민망합니다.1)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시간 좀 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지 않아도, 약속하지 않아도, 아무 때나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걸까요?

시설 입주자한테는 그래도 괜찮다는 걸까요?

입주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 무시 능멸하는 처사입니다. 입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2)3)4)

원문 : 정보원 카페 복지요결 게시판 [355](#)번 ‘인권 실태 조사 유감’

참조 : 위 게시판 [357](#)번 ‘시설 견학 시험, 입주자 선거실태 조사단 방문’

1) 더러는 특수주거침입이나 사생활 침해로 볼 소지가 있는 것도 하는가 봅니다. 참조 : 헌법 제16조와 제17조, 형법 제319조와 제320조

2) 여느 사람에게도 이럴 수 없지만 이런 꼴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는 차마 못할 짓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부당한 처사인지 항의는커녕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3) 사회사업가도 잘못이 없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자를 수용·보호하듯, 낮에도 시설 안에서 지내게, 그렇게 하니 그런 꼴 당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입니다.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돕는다면 낮에 시설 안에 있는 입주자가 적을 테고 그나마 당사자와 약속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4) 조사단 편의대로 들이닥쳐 ‘불러다 조사하게’ 해선 안 됩니다. 불러다 대령시킨다면 이는 입주자를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사단의 협조 요청을 입주자에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조사단이 직접 각 입주자에게 설명 의논하고 약속하여 ‘찾아뵙고 여쭙게’ 주선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도 입주자가 직장 학교 학원 문화센터 평생학습원 동호회 따위에 다닌다면 이런 볼일 먼저 보고 나서 시간과 역력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6. 살아 있는 한 삶이게

김하인 소설 「국화꽃 향기」 주인공 미주는 위암 말기 환자입니다. 죽어 가면서도 끝까지 품위와 자존심과 관계와 사랑을 지켜 내려 합니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살고 싶다고 사람이고 싶다고 절규합니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살고 싶었다. 그 어떤 이유로든 삶의 주연에서 조연으로 떨어지는 것, 능동적인 의지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바뀌는 것, 그것은 정말로 참기 힘든, 더없이 어리석은 것이었다.”

사람을 대상화하여 구차히 연명시키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민망합니다.¹⁾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삶’이고 싶었다는 절규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지켜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해집니다.²⁾ 2005. 5. 3

1) 연명이라도 도와야 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욱 힘을 일은, 사는 게 그냥 연명이 아니라 삶이고 사람살이이게 하는 일입니다. 저마다 자기 삶을 살며 더불어 살게 돕는 겁니다.

영화 [Automata](#) 에서

Jacq Vaucan: Funny, you were supposed to help us survive.

Blue Robot: Surviving is not relevant. Living is. We want to live.

Even a mere robot would like to "live", how could we help(make) our human clients just survive, especially in welfare institutions for mentally or physically weak persons in our society?

2) 무서운 전문가주의

사람을 대상화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떼어 놓습니다.

전문가 가는 곳에 혼을 잃고 구실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직 성할수록 이웃 인정 쇠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인격 관계 해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사람을 우민으로 만들며 사회를 각박하게 만드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7. 자기 결정권

1) 사회사업은 복지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상관하는 일입니다. 둘레 사람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관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일방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2)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일이라면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 불편 부담 책임을 초래하지 않는 일이라면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은 사회사업가가 간섭 통제할 권한이 없고 어찌할 의무도 없습니다.

어찌한다면 당사자가 잘 알아보고 판단 선택 결정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거들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당사자가 동의 또는 요청할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당사자가 무엇을 결정하는 데 사회사업가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수는 있어도 본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요컨대 사회사업 실제에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은 권리보다 책임이나 과업에 가깝습니다.

3) 사회사업은 복지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서로 의논하여 복지를 이룹니다.

당사자는 자기 처지와 역량, 타인에게 끼칠 영향을 헤아려 의논합니다.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기관의 정책과 형편,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 권한과 책임, 자원과 기회비용, 당사자나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의논합니다. 참조 : 63쪽 '의논하기'

탈시설론

http://welfare.or.kr [‘탈시설론’](#)에서 발췌했습니다. 2018.10

1. 탈시설

탈(脫) :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을 벗어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예컨대 탈옥에서 ‘탈’은 그 곳에서 나간다는 뜻이다, 탈수에서 ‘탈’은 그것을 없앤다는 뜻이다, 탈냉전에서 ‘탈’은 그 상태를 바꾼다는 뜻이다.

탈시설은 ‘시설을 벗어나기’입니다. 시설에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시설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시설의 어떤 상태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1) 물리적 탈시설

물리적 탈시설은 ‘시설에서 나가기’ 또는 ‘시설을 없애기’입니다.

① 시설에서 나가기 : 시설 밖으로 나가 산다는 뜻입니다. 시설 입주자로서 시설 밖으로 나가 살거나 시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 밖으로 나가 사는 겁니다.

② 시설을 없애기 : 시설 입주를 막고 신규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시설 입주자를 나오게 하고 시설을 폐쇄·폐지한다는 뜻입니다.

2) 기능적 탈시설

기능적 탈시설은 ‘시설 생활상을 바꾸기’입니다. 집단으로 움직이는 행태 ‘단체 생활’을 벗어나 독립생활 곧 저마다 따로 자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참조 : 11쪽 ‘독립생활’

2. 탈시설화

화(化)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렇게 만들거나 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탈시설화는 ‘탈시설하게 만들거나 탈시설하게 됨’이고, 시설의 일로서 탈시설화는 ‘탈시설하게 하기’입니다.

1) 물리적 탈시설화 : 주거 지원의 단계적 확대

물리적 탈시설화는 ‘시설에서 나가게 하기, 시설을 없애게 하기’입니다. 다만 시설이 나서서 입주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내거나 시설을 없애기는 어려운 노릇이라, 시설의 물리적 탈시설화는 결국 ‘입주자의 시설 밖 주거를 지원하기’로 정리됩니다.

입주자의 욕구와 역량,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주거를 지원하되 형편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갑니다.

- ① 원외 가구 거주 : 시설이 밖에 마련한 주택에 거주하게 돕습니다.
- ② 외박 : 때때로 시설 아닌 곳에서 하루 이틀이나 며칠 지내다 오게 돕습니다. 명분과 기회, 횟수와 기간을 늘려 갑니다.
- ③ 더부살이 : 일정 기간 결연 가정이나 위탁 가정 또는 친지 가정에서 지내게 돕습니다.
- ④ 판살림 : 좋은 집주인, 좋은 이웃이 있는 곳에서 자취하게 돕습니다. 시설이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 ⑤ 본가살이 : 본래 살던 집이나 가족의 집에 거주하게 돕습니다. 시설이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입주자는 시설 밖에서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시설로 돌아오거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기능적 탈시설화 : 생활 단위의 단계적 축소

가구는 ‘독립적 생활 단위’입니다. 가구마다 따로 생활합니다.

주거 공간이 시설 안에 있는 밖에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집 한 채나 방 하나를 단독으로 쓰든 다른 가구와 함께 쓰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적 탈시설화는 이와 같이 독립생활하게 돕는 겁니다.

입주자의 욕구와 역량, 시설 형편에 맞게 단계적으로 생활 단위를 축소해 갑니다.

① 동이나 층

시설 주택이 여러 동이나 층으로 되어 있으면 동이나 층을 각각 독립시설처럼 운영합니다. 동이나 층별로 따로 생활하게 돕는 겁니다.

② 집

집이 여러 호 있으면 집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 봅니다. 다른 집과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룹홈과 마찬가지로 집마다 따로 생활합니다.

③ 방

방이 여러 개 있으면 방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 봅니다. 다른 방과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독채를 쓸 형편이 아니어서 방 하나를 쓸 뿐인데 그렇다고 한 가구는 아닙니다.

④ 개인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 개별화하여 돕습니다. 얼마쯤 한계가 있지만 저마다 따로 자기 생활을 하게 돕습니다. 한집 한방에 산다고 다른 입주자와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설 입주자는 대개 남남이라, 한집 한방에 동거한다고 한 가구는 아닙니다.

3. 시설화와 탈+시설화

이른바 ‘시설화’에서 시설은 ‘수용시설’입니다.

당사자가 들어 사는 곳이 아니라 대상자를 수용 보호하는 곳, 입주자나 거주자가 아니라 입소자나 피수용자인 곳, 저마다 자기 생활을 하는 입주자의 집이 아니라 집단으로 움직이며 관리 통제하는 집단 수용소… 이와 같은 수용시설로 인하여 시설화를 이야기합니다.¹⁾

시설화는 수용시설화, 곧 지원 방식과 생활상이 수용시설처럼 되는 현상입니다.

입주자를 집단으로 움직이며 보호 관리 통제하는 행태를 띠게 되고 그로 인해 입주자가 자기 삶 자기 생활을 내려놓고 둘레 사람과 멀어지고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입니다.²⁾

-
- 1) 시설이 수용시설에 가까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시설에 수용 보호 행태가 남아 있습니다. 집중 지원 또는 고난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가 많은 시설이나 30인 미만 시설은 수용 보호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잔재나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시설은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 2) 시설화는 시설의 고유한 특성이 아닙니다. 시설에 오래 산다고 생기는 현상도 아닙니다. 지원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컨대 인력, 예산, 정부 정책, 감독기관의 요구, 가족의 태도, 지역사회 여건, 철학 따위가 부적절하여 생기는 현상이지 시설 존재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을 없애거나 시설에서 나가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탈+시설화는 시설화를 벗어나기입니다.

시설의 일로서 ‘탈+시설화’는 지원 방식의 시설화를 벗어나기입니다.

시설화한 지원 방식을 바꾸고 지원 방식이 시설화하지 않게 하면 입주자도 생활상의 시설화를 벗어나게 됩니다.

시설화의 실상과 탈시설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화는 입주자(입소자나 피수용자)를 집단으로 움직이며 단체 생활 시키는 현상입니다.

입주자가 단체 생활에 순응 안주하여 독립적 존재로서 자기 생활을 추구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현상입니다.

시설 생활은 곧 단체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입주자를 단체로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시설 입주자는 단체 생활 시켜도 된다는 듯, 단체로 관리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듯, 단체 생활이 이상할 게 없다는 듯…

수시로 집단 활동을 벌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미명하에 집단 활동을 아예 대놓고 일상화하기도 합니다. 집합시키거나 동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먹고 자고 움직이는 것을 공통 일과표에 맞추기도 합니다.

① 탈+시설화는 ‘입주자가 독립생활하게 돕기’입니다.

집단으로 움직이는 행태 ‘단체 생활’을 벗어나 저마다 따로 자기 생활을 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한집 한방에 산다고 다른 입주자와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2) 시설화는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가 자기 삶을 살지 못하거나 체념 포기하게 되고 더러는 자기 삶이라는 걸 생각지 못하거나 원하지도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안전과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단순 케어와 보호 또는 시설 내에서의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나 단체로 나가는 활동 외에 개개인의 삶을 위한 지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같은 법의 보장을 위한 책무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자의 인권이나 법의 실현을 위한 노력, 입주자가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하는 일은 모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사고 날 위험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주의 및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 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겁니다. 사고 뒷일이 사람을 힘들게 지치게 질리게 합니다.

이런 시비나 책임을 면피하려다 보면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됩니다. 보호 행위는 사실상 간섭·통제나 구속에 가까워지고 시설은 결국 ‘감옥’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의 입주자는 ‘자기 삶’이 없고 그저 안전하게 ‘생존 연명’하게 될 뿐입니다.

시설의 인권 침해, 시설화의 본질, 그 핵심은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결국 ‘입주자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② 탈+시설화는 ‘입주자가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돕기’입니다.

입주자가 저마다 나름대로 자신의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살아가게, 저마다 나름대로 하는 일이나 즐기는 것이 있게 돕는 겁니다.

3) 시설화는 입주자의 주거가 사실상 시설에 한정 고정되는 현상입니다.

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자유를 누리는 데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입주자가 많습니다. 이런 입주자는 사회사업가가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하릴없이 그저 시설에 붙박여 살아야 하니 간혀 사는 것이나 다름없을지 모릅니다. 주거를 적극 지원하지 않음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입주자를 구속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느 사람은 직장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얻어 살기도 합니다. 얼마간 고향집이나 자식 집에 가서 지내기도 합니다.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오기도 합니다. 연휴 방학 휴가 때 다른 데서 얼마간 지내기도 합니다. 입주자가 여느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 한들 사회사업가가 그에 맞게 주거를 지원할 생각이 없거나 방법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어찌겠습니까?

‘거주시설’이라 하니 주거 지원은 그 시설에 한정될 것 같습니다. ‘거주자’라 하니 그 시설에 거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시설의 거주자는 전입할 때부터 퇴거할 때까지 거의 그 시설에서 지냅니다. 명절에 고향집 다녀오거나 집단 활동으로 외박하는 일 외에 다른 곳에서 지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거가 한정되는 겁니다. 시설에 붙박여 살게 되는 겁니다.

탈시설자나 탈시설 운동가들이 시설을 ‘감옥’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주거가 시설에 한정 고정되는 현상과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③ 탈+시설화는 ‘입주자의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하기’입니다.

입주자의 욕구와 역량,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따라 시설 밖에서 지낼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4) 시설화는 입주자가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하지 않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대신 해 주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가 하릴없이 그저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현상,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조차 해 주기를 바라고 의존하려 드는 현상입니다.

④ 탈+시설화는 ‘입주자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기’입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이루게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다 하기 어려우면 과업을 세분하고 단계를 나누어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하고 나머지는 같이 하거나 대신 해 줍니다.

대신 해 줄 때는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당사자의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5) 시설화는 입주자를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로부터 따로 떼어 돕는 현상, 이로 인해 입주자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입주자가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는 데 돌레 사람이 함께하게 주선하지 않고 돌레 사람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시설이 대신 해 주곤 합니다. 입주자가 돌레 사람에게 사람 구실 하게 돕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가 돌레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고 잊혀 갑니다. 사람 구실 하지 않게 됩니다. 존재 가치나 삶의 의미를 잃어 갑니다.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하지 않고 입주자 전용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줍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 쪽 사람들이 입주자를 외면 기피 배제 차별하게 됩니다. 입주자가 지역 주민 시민으로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사회로부터 배제 분리되기도 합니다.

⑤ 탈+시설화는 ‘입주자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기’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돌레 사람의 일로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입주자의 일로 돌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 시민으로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돕는 겁니다.

나아가 ‘사람 구실’ 하며 살게 돕습니다. 어울려 사는 관계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4. 탈시설론 의문

1) 지역사회에서 산다?

지역사회 개념이랄 게 없을 뿐 아니라 특정하여 가리키는 바도 없는 것 같은데… 그저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합니다. 지역사회 거주니 지역사회 복귀니 지역사회로의 전환이니 합니다.

시설과 지역사회를 상호 배타적 관계인 것처럼, 시설은 지역사회가 아니고 시설 바깥만 지역사회인 것처럼, 시설 주택은 지역사회 주택이 아니고 시설에 살면 지역사회에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지역사회 안에 시설이 있으니 시설 주택도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도심에 있든 산속에 있든, 몇 집 몇 가구로 되어 있든, 한집 한방에 몇 명이 살든, 공간이나 세간을 따로 쓰든 함께 쓰든, 시설도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지역사회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공간이나 세간을 여러 가구가 얼마쯤 공유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방만 따로 쓰는 ‘기숙사형 생활주택’이 그러하고 한집 한방에 서로 다른 가구들이 동거하는 ‘공유주택’이 그러합니다.

시설 주택도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다만 시설 주택이나 여느 주택이나 형태가 어떠한 지역사회 주택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여느 주택에 살든 지역사회에 거주한다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에는 시설 주택과 지역사회 여느 주택 또는 일반 주택이 있을 뿐이고, 거주지라면 시설 안과 밖이 있을 뿐입니다.

‘시설 주택과 지역사회 주택’, ‘시설 거주와 지역사회 거주’ 따위로 대비할 수 없습니다.

2)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을 위해서 탈시설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통합이나 자립생활은 어떻게 돕는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사는 곳이나 지원 인력에 달렸다 할 게 아닙니다. 자립생활주택에 살면 된다거나 활동보조인이 잘 도울 수 있다 할 게 아닙니다.

① 지역사회 통합이 ‘사는 곳’에 달렸다 할 수 있을까요?

시설 밖에 거주한다고 지역사회 어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시설이라고 이렇게 살게 돕지 못한다 할 수도 없습니다.

② 자립생활이 ‘사는 곳’에 달렸다 할 수 있을까요?

시설 밖에 살아도 활동보조인이 대신 해 주다 보면 자립생활이 아니라 그저 의존 연명하는 신세 되기 쉽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시설에 살아도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 개별화하여 도우면 저마다 따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한데, 사는 곳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을 위해서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 시설을 없애야 한다.’ 할 수 있을까요?

③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 활동보조인이 잘 도울 수 있을까요?

정신·신체 기능이 심하게 손상·결여된 사람,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활동보조인이 맡으면 그저 일 생기지 않게 보호 수발하는 정도일 겁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을 도와줄 활동보조인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동일 수가라면 이런 사람을 기피할 테고 차등 수가라면 그 기준을 두고 시비와 다툼이 있을 겁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나름이겠지만, 활동보조인이 있어 돌레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 제 할 일조차 활동보조인에게 미루거나 활동보조인을 배려하여 자기 삶을 얼마쯤 내려놓기도 합니다.

이는 활동보조인 개인의 성품이나 역량 문제가 아닙니다.

활동보조인의 직무 내용과 경제적 속성상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탈시설자 특히 고도 지원이 필요한 탈시설자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지 모릅니다.

활동지원 제도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 생활을 활동보조인이 잘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3) 시설을 없애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이 목적이라면 어디서든 그렇게 돕게 하고, 시설 운영 형태나 지원 방식이 문제라면 고치게 하고, 인권 침해나 비리가 문제라면 처벌할 일 아닌가요?

시설을 없애야 한다 하려면 그에 맞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 시설이나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시설에 대하여 그 존재 자체가 부당함을 밝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이나 자립생활, 인권 침해나 비리는 운영 방식이나 지원 방식에 달린 문제인데 이를 내세워 시설 자체를 없애야 한다 함이 온당한 주장일까요?

이런 식으로 시설을 부정하고 몰아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시설의 구실과 협력을 배제한다면, 탈시설은 물론이고 탈시설 후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까지 더디고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5. 시설 사회사업

인권단체 자립생활센터 부모연대 탈시설자 입주자... 너도나도 탈시설을 주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까지 나서서 탈시설과 대안을 논합니다.

참조 : <http://welfare.or.kr> [탈시설론](#) 부록 '인권위 탈시설 방안 연구 보고서 평론'

시설 사회사업은 어찌할까요?

시설에서 나가겠다고거나 시설을 없애라는 등 누가 뭐라 하든, 커뮤니티 케어니 사회서비스원이니 하는 정책이 어떻게 되든, '탈시설+화'니 '탈+시설화'니 하는 이론이 어떠하든...

어쨌든 시설 사회사업은

- 1)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생활하게 돕습니다. 참조 : 85쪽 '가구',
- 2) 입주자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고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고 사람 구실 하며 살게 돕습니다. 참조 : 86쪽 '입주자'

내일 시설의 종말이 온다 해도

사회사업가는 오늘 입주자를 이렇게 돕습니다.

떠날 사람이라면 더욱 이렇게 돕습니다.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이렇게 돕습니다.

떠나서도 이렇게 돕는 사람 만나 이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6. 뒷이야기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배타적 관계인 것처럼, 시설은 지역사회가 아닌 것처럼, 시설 주택은 지역사회 주택이 아니고 시설에 살면 지역사회에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시설과 지역사회를 대비하여 이러쿵저러쿵하더니 급기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탈시설을 운운하는데, 명분은 그럴듯하나 적잖은 주장이 과격 편협하고 모욕적이며 그 논거라는 게 사실과 다르거나 터무니없고 부당하게 일반화하기 일쑤라, 성인 군자 못 되고 수양이 부족하여 대거리하자니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슨 주장이랍시고 논리정연하게 내용을 자신도 관철할 의지나 능력도 별로 없지만, 시설 사회사업가들은 얼마나 허무하고 참담할까, 이렇게라도 토로하지 않으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어찌나 하릴없이 그저 냉가슴만 앓다 화병 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어찌해야 하나 이래저래 얼마나 답답하고 심란할까 싶어, 애매히 탈시설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찍혀 매도당할 수도 있고 공연히 나서서 무모하게 저항한다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뒤늦게 쓸데없이 수선 편다고 핀잔먹을 수도 있음을 예상치 못하는 바 아니나,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받거나 그런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외인이 그나마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비한 글이나마 숙제하는 셈 치고 끄적여 보는데, 입주자를 사람답게 도우려 애쓰는 사회사업가들이 눈에 밝히고, 입주자가 당당히 주인 노릇 하며 자기 삶을 살아가고 둘레 사람을 비롯한 지역사회 여느 사람과 조금씩 어우러지며 그 관계 속에서 사람 구실 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들이 귓가에 맴돌고,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 그 이야기에 감동하여 아~ 사람 사는 것 같다 눈물 나게 고맙다 하며 응원하던 일들이 떠오르고, 떠난 후에 활보 만나 제구실 놓아 버리고 둘레 사람 멀어져 속상하다던 사회사업가들의 탄식 소리 쟁쟁하고, 지난 세월 파란만장했던 시설의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지라, 만감이 서려 그만 아득해집니다.

사고

<http://welfare.or.kr> '사고'에서 발췌, 2019년 3월 현재 정보로 고쳤습니다.

1. 판례의 기초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초가 있습니다. 참조 : <http://welfare.or.kr> [사고](#) - 판례집

첫째, 현실을 알아주고 정상을 참작합니다. 시설의 인력·재정과 업무 특성과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얼마쯤 참작합니다.

진정성을 알아줍니다. 평소 어떤 뜻으로 어떻게 도와 왔는지 그 기록과 설명, 그리고 법정에서의 태도나 인상을 고려합니다. 당해 사고 자체나 한두 번 또는 한두 가지 잘못만으로는 무겁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 진정성 있게 지원하며 잘 기록해 놓는다면 사고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독관청이나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나 장애인부모회도, 입주자나 가족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둘째,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 사고 대응 지침, 업무 일지(지원 기록) 따위의 문건을 판단 근거로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났을 때 변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문건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특히, 규정 지침 계약서에 주의나 보호 관련 조항은 최소한으로 기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항이 많거나 세세하면 다 지키기 어렵고 결국 생활지도원이 사고 책임을 뒤집어쓰기 십상입니다. 주의나 보호 의무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없게 해야 합니다.

2. 대비책

1) 사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①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¹⁾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및 상해보험료

의료재활사업비(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비급여 대상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 지역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②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²⁾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 : 단체 상해공제, 복지시설 손해배상 책임공제, 복지시설 화재공제, 영업배상 책임공제 등

③ 자원봉사종합보험 (VMS 공지 글 참조)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 배상책임 등에 대비한 국고 보조 보험

2) 사고 예방 및 대응 지침과 관련 물품을 갖추고 교육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3) 시설의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서, 복무규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 따위에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참조 : 136쪽 ‘문건 명시 사항’

1)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0쪽 - 별표 4.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생활지도원은

- ① 시설의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서, 복무규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 따위에 밝힌 지원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지원합니다.
- ② 지원 일지를 충실히 작성합니다. ‘기록’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이상과 같이 하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따위의 사고라면 몰라도, 복지요결을 적용하다 생기는 사고, 입주자의 삶과 사람살이를 세우려다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얼마쯤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¹⁾

1) 사고 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물러날 일이면 물러나고… 각각 합당하게 조치합니다.

뜻을 좇아 행하다가 잘못되어 비난 징계 형벌 받고 애통하며 눈물 날 때 사회사업가이기에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그 괴로움을 감수 감사 감내합니다.

다만 뜻을 좇아 행할 뿐입니다.

뜻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뜻을 버리고 달리 행할 수 있을까요?

의를 위해, 사랑을 위해, 이념·신앙·자존심·명예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도 하는데… 해직, 징역·벌금 따위가 대수일까요?

시비 책임 따위를 면피하려고 입주자의 ‘삶’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삶 사람살이 생활’을 버리고 그저 안전하게 ‘생존 연명’이나 하는 꼴이라면 그런 안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고도 ‘산다’ 할 수 있을까요?

변론

1. 사고에 대해 시설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¹⁾

2. 손해배상책임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 또는 범죄의 성립요건과 그에 대한 변론 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곧 그 상황에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같은 직책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 곧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로서는 그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로 인한 책임을 구별하지 않으나 형법에서는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 지원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입주자와 합의하여 지원한 행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변론은 이런 사유를 입증하는 겁니다.

3)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손해가¹⁾ 있어야 하고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4)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이면 그 감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을 가해한 경우 시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요건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사고 변론은 주로 과실과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데 있습니다. 문제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곧 정당한 사유가 있고 주의를 게을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겁니다.

1)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대한 손해입니다. 직접적 손해뿐 아니라 일실이익(기회비용)과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과실상계·손익상계)합니다.

3. 민사소송의 원칙

1) 처분권주의 :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판정합니다. 법관이 알아서 일방의 권리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2) 변론주의(↔직권탐지주의) :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법관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는 게 아닙니다.

※ 서면주의(↔구술주의) : 실제 재판은 준비서면에 드러난 쟁점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3) 자유심증주의 : 주장하는 태도, 성실성, 변론할 때의 인상 등을 고려하여 사실인정을 합니다. 확증이 없어도 여러 사정을 보아 개연성이 있으면 사실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자신의 권리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서면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엄밀하거나 확실하지 않더라도 판사를 잘 설득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변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도 공판은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각자 주장을 입증하고 반증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모두 입증해야 하고 검사의 유죄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으로서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할 의무는 없지만) 주장과 입증을 위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위법성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 지원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민법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형법은 이에 더하여 정당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등을 그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하지 아니한다.

입주자를 지원하는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입주자와 합의하여 지원한 행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변론의 핵심은 입주자 지원 행위에 이런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1.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한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및 입주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회사업 행위’입니다.

2)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사회사업 핵심 원리와 방법에 따라 행한 ‘정당한 업무 행위’입니다. 시설 홈페이지와 소개책자,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서, 복무규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 따위에 밝힌 원칙에 따라 지원한 ‘정당한 업무 행위’입니다.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우리 시설의 업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리 시설은 입주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입주자가 주인 노릇 하게 돕고 나아가 각

입주자가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지원합니다.

② 우리 시설은 입주자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입주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돕습니다.

③ 우리 시설은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입주자가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이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이익(지역사회생활과 사생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등)과 침해된 이익(안전 등)의 균형성 관점에서 정당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사람이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고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 같기를 바랍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약자도 살 만한 사회 곧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복지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이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입주자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하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이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그래야 지역사회가 약자도 살 만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 침해될 수 있는 이익 곧 안전도 중요하지만, 보호되는 이익 곧 사람답게 살 권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안전’ 등의 이익이 얼마쯤 침해될 수 있음을 알더라도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 행위를 얼마쯤 제한하려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 우리 시설은 입주할 때 당사자와 및 그 가족이나 후견인 등과 계약하고, 해마다 당사자 및 가족을 비롯한 둘레 사람과 의논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는데, 그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대신 해 주거나 시설 안에서 돕는 방식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점, 더디고 힘들고 위험해도 최대한 당사자가 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고, 시설 바깥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을 이용하게 돕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2)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까지 배제한다는 계약이 아닙니다.¹⁾

‘보호’ 행위가 자칫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지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입주 계약할 때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울 때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밝힘으로써 ‘보호 의무’를 얼마쯤 한정하여 그만큼 다른 중요한 권익들을 보장하겠다는 계약입니다.

3) 이와 같이 작성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과 의논하여 이를테면 혼자서 또는 둘레 사람과 함께 등하교·출퇴근·목욕하거나 가게·학원·문화센터·친척 집에 다녀오거나 극장·야구장·공원 등에 놀러가거나 칼과 불을 사용하여 요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지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이 할 경우 ‘안전’과 같은 다른 이익이 얼마쯤 훼손될 수 있음을 알고 감수하겠다는 뜻에서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1)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과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곧 그 상황에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같은 직책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 곧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로서는 그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주의의무

1) 입주자 지원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호를 적용하곤 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¹⁾

물론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2) 다만 법에 규정된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²⁾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의 생활지도원 배치기준³⁾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86조(벌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생활지도원 :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10명당 1명 이상, 아동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5명당 1명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4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명당 1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제3호에 의한 주의 내지 보호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면, 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단순 케어와 보호 또는 시설 내에서의 프로그램이나 단체로 나가는 활동 외에 입주자 개인의 삶과 사람살이를 위한 지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같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중증장애인은 이런 권익을 실현하는 데 얼마쯤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통상의 사회사업가가 어떤 일의 위험을 예견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죄를 적용한다면 결국 저마다 자기 생활을 하는 입주자 개인의 삶,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사람살이는 지원하기 어려울 겁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주의의무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의 ‘기본적 보호’의 범위나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어나 보호란 사실상 간섭·통제나 구속에 가까워질 것이고 따라서 시설은 사실상 수용소 또는 구금·보호시설이나 다름없게 되고 말 겁니다.

이러므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밝힘으로써 ‘보호의무’를 얼마쯤 한정하여 그만큼 다른 중요한 권익들을 보장하게 해야 합니다.

3)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49쪽 - 별표 3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①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이용자 현원÷4.7×2’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로 지원) ②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③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④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2. 주의의무 이행 여부 입증

1) 입주자에 대한 지원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주자를 지원하는 행위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으로서 그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또는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2) 변론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주자 지원에 요구되는 통상적 수준의 주의 곧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입주자를 지원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한 지원일지와 개인별 지원보고서 따위가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월평빌라 기록을 보면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직원 차 타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 버스 타고 등하교하도록 도왔습니다. 얼마동안 직원과 함께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기사와 인사하고, 차비 내고, 승객들 얼굴을 익히고, 하차할 곳을 익히고, 하차 후 학교 가는 길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부터 교문을 100미터 남겨 두고 혼자 가도록 하고, 500미터 두고 혼자 가도록 하고, 하차 후 혼자 가도록 했습니다. 잘 갔습니다. 용기 내어 혼자 버스 타고 가도록 했습니다. 기사님께 부탁드리고 승용차로 따라갔습니다. 내릴 곳에 잘 내렸고 학교까지 잘 갔습니다. 하교도 같은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이제 혼자 버스 타고 학교 다닙니다.”

책임성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이면 감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을 가해한 경우 시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¹⁾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38전)

1) 형법 제2장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게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서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통 피해자가 집니다.

다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우는 (입증책임 전환) 경우도 있고, 과실이 없어도 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 원칙)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불법행위를 특수한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민법 제755조 이하에 정한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이 그러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을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소연

보호 필요, 인정합니다.

어떤 보호가 얼마쯤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요. 인정합니다.

다만 그건 그 사람이 그 때 그 일로 그런 보호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말이지, 시설 입주자라고 다 보호하려 들거나 온갖 일에 항상 보호하려 들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호하려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저도 압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호 소홀이라는 죄목의 시비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 처지 그 수고 그 어려움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사람입니다. 시설 입주자라는 껍데기 말고 이 ‘사람’ 진짜 저를 봐 주십시오. 구차히 연명시키지 말고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고 인간이게, 아프고 다치고 죽는다 해도 제 삶이고 제 사람살이이게, 하루라도 그렇게 사람같이 살다 가게...

보호라는 미명하에 입주자를 대상화하고 구속해 온 연명 서비스...

이제 그만합시다.